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95
----------	-----

2012년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2. 6. 8
2. 제안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2. 6. 27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2. 7. 2)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2012. 7. 3)
    - 안건상정, 의결

## Ⅱ . 제안설명 요지(교육행정국장 : 구효중)

### 1.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세입·세출결산 총괄

- 201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61억원을 포함하여 7조 3,235억원임.
  - 총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7조 3,721억원,
  - 총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4%인 6조 9,122억원,
  - 세계잉여금은 4,599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등 1,760억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지방교육채 상환액 603억원과 순세계잉여금 2,236억원임.

#### 나. 세입결산

- 2011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7조 3,721억원으로
- 세입징수결정액 7조 3,861억원 대비 99.8%를 징수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7%임.

- 불납결손액은 5억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2%인 134억원임.
- 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교과부 등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조 510억원과 국고보조금 265억원으로 총 4조 776억원이며, 전체 세입액의 55.3%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법정전입금 2조 3,816억원과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1,419억원으로 총 2조 5,236억원이며, 세입예산의 34.2%임.
- 기타 민간이전 수입이 239억원(0.3%)임.
- 자체수입은 2,00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7%임
  - 자체수입의 대부분은 입학금 및 수업료, 평생학습수입 등으로 1,699억원,
  -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3억원
  - 재산수입 45억원, 이자수입 114억원
  - 보증금회수 수입 1억원과 잡수입 등 93억원임.
- 지방교육채는 없으며, 이월금은 5,461억원임.

## 다. 세출결산

- 2011년도 총 세출액은 6조 9,122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4%이고, 1,760억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2,353억원임.
- 2011회계연도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은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6조 4,675억원,
  - 평생·직업교육 부문 지출에 191억원,
  - 교육행정에 4,255억원을 지출하였음.

## **라.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 예산이용은 없으며,
- 2011회계연도 예산전용액은 438억원을 총 66개 사업에서 130건을 전용하였음.
- 2011회계연도 예산이체는 총620건 4조 9,255억원으로 「서울 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예 따라 공보담당관 등 41개 부서의 소관업무 조정예 따른 예산의 이동임.

## **마. 예비비 결산**

- 예비비는 예산액 99억 3,300만원의 85%에 해당하는 84억 3,9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3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8,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억 5,400만원이 불용됨.

## **바. 다음연도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총301건 1,760억원으로 이월률은 2.4%임.
- 계속비는 없음.

## **사.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2011년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전년도말 대비 97억원이 증가한 2,695억원이며, 채무액은 전년도말 대비 2,710억원이 감소한 2,930억원임.

## 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7조 7,470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939억원이 증가하였고,
- 2011년도말 현재 보유물품은 80,302건에 4,522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381억원이 증가하였음.

## 자. 재무보고서

- 2011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총 자산 13조 479억원, 총 부채 1조 3,063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조 7,416억원임.
- 재정운영 성과는  
총 수익 7조 696억원, 총 비용 6조 5,613억원으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083억원임.

### Ⅲ .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남중)

#### 1. 검토 총괄

- 2011년 본예산과 1차례의 추경예산 등을 포함한 최종예산액은 7조 874억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조 3,236억원으로 전년 대비(7조 1,657억원) 2.2% 증가하였음.

〈표 3-1〉 최종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

2011년도						2010년도 예산현액 (G)	전년도 대비	
당초예산 (A)	추경증액 (B) 1회추경	간주처리 (C)	최 종 예산액 (D=A+B +C)	전년도 이월액 (E)	예산현액 (F= A+B+C+ D+E)		증감 (F-G)	증감 비율
6,616,502	386,633	84,309	7,087,444	236,114	7,323,558	7,165,685	157,873	2.2
	7,003,135							

- 세입결산액(수납액) 7조 3,722억원에서,  
세출결산액(지출액) 6조 9,122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4,600억원임.
- 세계잉여금 4,600억원에서  
사고이월비 1,760억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등 60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36억원임.

-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100.7%로, 전년(99.4%) 대비 1.3% 증가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94.4%로 전년도(91.7%)에 비해 2.7% 증가하였음.
- 세입(7조 3,722억원)은 5년 평균액(7조 850억원)보다 2,872억원 많은데도, 세계잉여금(4,599억원)은 5년 평균액(4,982억원)보다 383억원 적게 발생하였음.
- 국고보조금 잔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특성화고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의 국고 부담률이 상향 조정(40%→50%)되었는데, 교과부에서 2011.12.30 회계연도말에 교부하여 미집행분이 불용되었기 때문임.
- 사고이월액은 전년도(2,361억원) 대비 601억원이 감소한 총301건 1,760억원(예산현액 2.4%)으로,
  - 전년도와 같이 2011년도 추경을 통해 증액된 사업의 공사기간 부족의 사유로 이월된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계약기간 미도래, 납품(공사) 지연, 동절기 공사 제한,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된 바, 사고이월비가 최근 5년 평균치보다 높은 것은 개선하여야 할 것임.
- 순세계 잉여금 2,236억원은 예산현액 대비 3.1%로 최근 5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률(4.4%)보다 1.3% 낮고, 전년도(4.3%) 대비 1.2% 감소하였으며,

- 최근 5년간 순세계 잉여금 평균액 3,072억원에 비하여 835억원이 적은 금액임.
- 전년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균형의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이라 판단됨.

〈표 3-2〉 세입·세출 결산 내역(2011~2007)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0	2009	2008	2007	5년 평균
최종예산액(A)	7,087,444	7,016,645	7,021,630	7,078,366	6,100,571	6,860,931
전년이월액(B)	236,114	149,040	206,381	125,670	232,305	189,902
예산현액(C=A+B)	7,323,558	7,165,685	7,228,011	7,204,036	6,332,876	7,050,833
세입결산액(D)	7,372,173	7,119,817	7,254,615	7,272,762	6,405,454	7,084,964
세출결산액(E)	6,912,226	6,573,690	6,733,074	6,667,954	6,046,910	6,586,771
<b>세계잉여금(F=D-E)</b>	<b>459,947</b>	<b>546,127</b>	<b>521,541</b>	<b>604,808</b>	<b>358,544</b>	<b>498,193</b>
명시이월비	0	0	0	43,069	35,602	15,734
사고이월비	176,007	236,114	149,040	163,313	90,068	162,908
계 속 비	0	0	0	0	0	0
국고보조잔액 및 지방채 상환	60,318	3	1,603	0	0	12,385
순세계잉여금(G)	223,622	310,010	370,898	398,426	232,874	307,166
순세계잉여금률(G/C)	3.1	4.3	5.1	5.5	3.7	4.4

○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2%인 2,353억원임.

- 매년 불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불용액이 대폭 감소하여 전체 불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 불용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106억 2,200만원(4.5%),  
 예산절감으로 330억 6,700만원(14.1%),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48억 8,800만원(2.1%),  
 집행잔액으로 1,867억 4,800만원(79.3%)이 불용되었음.

〈표 3-3〉 불용액 원인별 구분

(단위 : 백만원)

성질별	예산현액 (A)	불용액 (B=C)	불용액 원인별 내역(C)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합 계	7,323,558	235,325 (100%)	10,622 (4.5%)	33,067 (14.1%)	4,888 (2.1%)	186,748 (79.3%)
인 건 비	3,066,966	46,854 (100%)	116 (0.2%)	57 (0.1%)	150 (0.3%)	46,531 (99.3%)
물 건 비	290,154	26,249 (100%)	1,383 (5.3%)	7,573 (28.9%)	456 (1.7%)	16,837 (64.1%)
이전지출	515,934	8,198 (100%)	523 (6.4%)	958 (11.7%)	316 (3.9%)	6,401 (78.1%)
자산취득	820,252	57,518 (100%)	2,670 (4.6%)	13,816 (24.0%)	0 (0.0%)	41,032 (71.3%)
상환지출	230,281	4,751 (100%)	0 0	0 0	2,001 (42.1%)	2,750 (57.9%)
전출금등	2,395,641	90,256 (100%)	5,930 (6.6%)	10,663 (11.8%)	1,960 (2.2%)	71,703 (79.4%)
예비비및기타	4,330	1,499 (100%)	0 0	0 0	5 (0.3%)	1,494 (99.7%)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11년 2월 1일 조직개편 및 부서간 업무조정으로 총620건 4조 9,255억 6,900만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으며, 전년대비 498건, 금액은 6,547억 4,100만원이 증가한 것임.

○ 전용은 130건, 438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음.

- 2010년도 결산에 비해 건수에서는 26건이 감소하였으나, 금액면에서는 오히려 12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전용은 38건 29.2%에 달함.

- 전용은 시의회가 의결한 세출예산을 당초 정한 목적외 사용 금지의 원칙의 예외에 속하는 제도로써 자칫 '예외' 규정이 '원칙'보다 우선시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 당초 승인한 사업에 대하여 중대한 사업계획 변동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시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당해연도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 수립에 있어 보다 면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본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임.

○ 예비비는

가칭) 효자유치원 부지매입비 및 폭우피해복구비 등 총36건에 대하여 84억 4,000만원이 지출결정되었고, 73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5억 8,800만원이 이월되어, 지출결정액 대비 5.4%인 4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27조 7,470억 9,400만원이며, 2010년도말의 27조 1,531억 5,200만원에 비해 5,939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2. 세입결산

### 가. 세입결산 총괄

〈표 3-4〉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최종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예산현액 ③=①+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7,087,444	236,114	7,323,558	7,386,151	7,372,173	507	13,471

○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486억 1,500만원을 초과 수납한 바,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7%임.

〈표 3-5〉 세입결산 내역(2011~2007)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0	2009	2008	2007	5년 평균
예산액(A)	7,087,444	7,016,645	7,021,630	7,078,366	6,100,571	6,860,931
예산현액(B)	7,323,558	7,165,685	7,228,011	7,204,036	6,332,876	7,050,833
징수결정액(C)	7,386,151	7,133,495	7,266,569	7,284,524	6,417,353	7,097,618
수납액(결산액) (D)	7,372,173	7,119,817	7,254,615	7,272,762	6,405,454	7,084,964
불납결손액 <sup>1)</sup> (E)	507	415	707	668	437	547
미수납액(F)	13,471	13,263	11,247	11,094	11,460	12,107
예산현액대비 수납률(D/B)	100.7	99.4	100.4	100.9	101.1	100.5

1) 불납결손처분은 정당하게 징수결정되어 징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임

## 나. 세입재원별 결산

〈표 3-6〉 세입 재원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 구성비율	예산현액대비	
					증 감 (C-A)	수납률 (C/A)
<b>합 계</b>	7,323,558	7,386,151	7,372,173	100.0	48,615	100.7
<b>이 전 수 입</b>	6,589,575	6,625,254	6,625,254	89.9	35,679	100.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036,356	4,051,024	4,051,024	55.0	14,668	100.4
국고보조금	20,147	26,599	26,599	0.4	6,452	132.0
법정 이전수입	2,381,680	2,381,680	2,381,680	32.3	0	100.0
비법정 이전수입	134,104	141,977	141,977	1.9	7,873	105.9
민간이전수입	17,288	23,974	23,974	0.3	6,686	138.7
<b>자체수입</b>	187,859	214,770	200,792	2.7	12,933	106.9
기본적 교육 수입 (입학금및수업료)	163,323	169,461	167,985	2.3	4,662	102.9
선택적 교육 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2,500	2,002	2,002	0.0	△498	80.1
사용료 및 수수료	5,536	5,356	5,348	0.1	△188	96.6
자산임대수입	594	542	472	0.0	△122	79.5
자산매각대	3,139	4,357	4,122	0.1	983	131.3
이자수입	10,433	11,410	11,410	0.2	977	109.4
보증금회수	20	120	120	0.0	100	600.0
제재금수입	521	1,806	1,132	0.0	611	217.3
잡수입	1,253	7,863	7,562	0.1	6,309	603.5
과년도수입	540	11,853	639	0.0	99	118.3
<b>지방교육채</b>	0	0	0	0.0	0	0
<b>이월금</b>	546,124	546,127	546,127	7.4	3	100.0

### 1)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및 민간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6조 6,253억원을 수납(수납률 100.5%)하였는 바,
  - 「국고보조금」 및 「민간이전수입」의 경우, 교과부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될 것으로 고시한 보조 사업예산을 우선 본예산의 자체예산으로 기편성하여, 당해연도 중 지원된 자금은 세입예산에 편성(이중편성)을 하지 못하고, 징수결정 및 수납만 하였기 때문에 수납률이 100%를 초과한 것임.

- 「법정 이전수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액(서울시 내시액)과 동일한 2조 3,817억원 전액이 전입되었으나,
- 서울시 지방세세입 결산액(2조 4,227억원) 대비 차액 미전입분 410억원에 대하여는 추가 전입을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적기에 미전입 수입을 확보해야 할 것임<sup>2)</sup>.

〈표 3-7〉 서울시 법정전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 편성액 (당초 내시액) (A)	실전입금 (B)	서울시 세입결산액 (C)	비교증감	
				예산액 대비 (B-A)	결산액 대비 (B-C)
합 계	2,381,680	2,381,680	2,422,714	0	△ 41,034
시도세	832,530	832,530	833,466	0	△ 936
지방교육세	1,198,204	1,198,204	1,236,188	0	△ 37,984
담배소비세	281,354	281,354	283,468	0	△ 2,114
학교용지부담금	69,592	69,592	69,592	0	0

※ 서울시 세입결산액은 취득세 감면분 서울시 지방채 발행액 제외 금액임

- 특히, 2011년도 1분기에는 서울시로부터 시·도세와 담배소비세의 법정전입금이 전무하여 교육청의 2011년도 상반기 사업추진에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다 할 것인 바,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연중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임.

2) 서울시 법정전입금 관련 규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③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제3조(의무) 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할 수 있다.

〈표 3-8〉 법정전입금 전입 내역(2011~2008)

(단위 : 백만원, %)

재원별	회계연도	결산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누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누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누계 금액 (비율)
시·도세	'11년	832,530	0	269,858 (32.4)	269,858 (32.4)	292,505 (35.1)	562,363 (67.5)	270,167 (32.5)	832,530 (100.0)
	'10년	788,426	142,772 (18.1)	142,770 (18.1)	285,542 (36.2)	214,156 (27.2)	499,698 (63.4)	288,728 (36.6)	788,426 (100.0)
	'09년	847,678	151,490 (17.9)	151,490 (17.9)	302,980 (35.7)	227,235 (26.8)	530,215 (62.5)	317,463 (37.5)	847,678 (100.0)
	'08년	927,895	200,739 (21.6)	174,000 (18.8)	374,739 (40.4)	168,000 (18.1)	542,739 (58.5)	385,156 (41.5)	927,895 (100)
담 배 소비세	'11년	281,354	0	111,559 (39.7)	111,559 (39.7)	69,769 (24.8)	181,328 (64.4)	100,026 (35.6)	281,354 (100.0)
	'10년	252,860	42,620 (16.9)	42,620 (16.9)	85,240 (33.7)	63,930 (25.3)	149,170 (59.0)	103,690 (41.0)	252,860 (100.0)
	'09년	259,390	42,700 (16.5)	42,700 (16.5)	85,400 (32.9)	64,050 (24.7)	149,450 (57.6)	109,940 (42.4)	259,390 (100.0)
	'08년	253,758	61,911 (24.4)	59,000 (23.3)	120,911 (47.7)	44,000 (17.3)	164,911 (65.0)	88,847 (35.0)	253,758 (100.0)
지 방 교육세	'11년	1,198,204	150,000 (12.5)	229,574 (19.2)	379,574 (31.7)	300,000 (25.0)	679,574 (56.7)	518,630 (43.3)	1,198,204 (100.0)
	'10년	1,101,976	93,754 (8.5)	281,262 (25.5)	375,016 (34.0)	237,508 (21.6)	612,524 (55.6)	489,452 (44.4)	1,101,976 (100.0)
	'09년	1,160,438	98,674 (8.5)	296,021 (25.5)	394,695 (34.0)	296,020 (25.5)	690,715 (59.5)	469,723 (40.5)	1,160,438 (100.0)
	'08년	1,202,160	269,412 (22.4)	16,600 (1.4)	286,012 (23.8)	364,107 (30.3)	650,119 (54.1)	552,041 (45.9)	1,202,160 (100.0)
계	'11년	2,312,088	150,000 (6.5)	610,991 (26.4)	760,991 (32.9)	662,274 (28.6)	1,423,265 (61.6)	888,823 (38.4)	2,312,088 (100.0)
	'10년	2,143,262	279,146 (13.0)	466,652 (21.8)	745,798 (34.8)	515,594 (24.1)	1,261,392 (58.9)	881,870 (41.1)	2,143,262 (100.0)
	'09년	2,267,506	292,864 (12.9)	490,211 (21.6)	783,075 (34.5)	587,305 (25.9)	1,370,380 (60.4)	897,126 (39.6)	2,267,506 (100.0)
	'08년	2,383,813	532,062 (22.3)	249,600 (10.5)	781,662 (32.8)	576,107 (24.2)	1,357,769 (57.0)	1,026,044 (43.0)	2,383,813 (100.0)

\* 작성요령 : '08년~'10년까지는 결산액을 기준으로 작성

## 2)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기본적·선택적 교육수입, 공유재산인 토지임대료 수입을 비롯한 자산매각대와 잡수입 등의 수납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106.9%이며, 이는 전년(103.7%) 대비 3.2% 증가한 것임.

- <표3-6>에서와 같이 「자산매각대」는 공유재산 중 토지와 관용 차량 등의 매각으로 예산현액(31억 3,900만원) 대비 131.3% 증가한 41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보증금회수」는 원어민 주거임차 계약 만료에 따른 전월세 보증금 회수금으로 예산현액(2,000만원) 대비 600%인 1억 2,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잡수입」은 학교 회계전출금 반납금, 재난공제회 복구비 등으로 예산현액(12억 5,300만원) 대비 603.5%인 75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는 바,
- 이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써 비록 자체수입의 특성상 세입의 추계를 정확히 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자체수입을 추계하는 시스템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지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것임.

### 3) 지방교육채

- 2011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음.

### 4) 이월금

-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2,361억원, 국고보조금 잔액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00억원 등 총 5,461억원임.

## 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 1) 불납결손액

- 불납결손액은 수업료와 과년도 수입에서 총 5억 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99.6%인 5억 500만원이 고등학교 자퇴·제적 및 지난연도 수업료 시효도과 등으로 발생한 수업료 결손액임.

### 〈표 3-9〉 불납 결손액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징 수 결 정 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결 손 내 역
				금액	구성 비율	
계	163,218	180,714	168,024	507	100	
수업료	162,678	168,861	167,385	505	99.6	- 고등학교 자퇴·제적 등 수업료 결손액 : 44 - 고등학교 지난연도 수업료 : 461
과년도수입	540	11,853	639	2	0.4	- 채무자 무재산 등 과년도수입 : 2

## 2) 미수납액

○ 2011회계연도 자체수입 중 미수납액은 134억 7,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1,995억 4,800만원) 대비 미수납률은 6.8%임.

- 변상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상금 부과·징수<sup>3)</sup>는 공유재산의 불법 점유자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써 세입예산 증대 뿐 만아니라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이 불법으로 사용·수익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으나,
- 2011회계연도의 경우, 변상금의 미수납률은 전년도 대비(58.5%) 7.6% 증가한 66.1%인 4억 7,900만원으로, 자체수입 기반이 제한적인 서울시교육청은 변상금 미수납 발생규모를 감소시켜야 할 것임.
- 다만, 불법점유자 대부분이 저소득 장기 체납 영세민이나, 교육청은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점유자 등과 원만한 합의로 부과된 변상금이 미수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임.

3) 변상금 부과 관련 법률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1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의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 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④ 점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까지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다.

- 아울러, 「과년도 수입」의 경우, 예산현액(5억 4,000만원)보다 113억 1,300만원이 더 증가한 118억 5,300만원이 징수결정되었으나, 6억 3,900만원이 실수납되고, 112억 1,200만원이 미수납되어 전체 미수납액의 83.2%를 차지하고 있는 바,

○ 과년도 수입 등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현실적으로 수납이 불가능한 장기 체납 과태료나 변상금 등이 누적된 것으로 사료되며 미수납액 규모도 매년 감소되지 않고 있어,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서울시교육청이 자체수입에 대한 관리를 방만히 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3-10〉 자체수입 중 미수납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미수납 내역
					금액	구성비	
계	172,979	199,548	185,570	507	13,471	100	
수업료 (지난연도 수업료)	162,678	168,861	167,385	505	971	7.2	○수업료 : 471 - 유치원 3, 고등학교 468 ○지난연도수업료 : 500 - 유치원 1, 고등학교 499
사용료 수입	4,276	4,332	4,324	0	8	0.1	○토지사용료 : 5 ○기타사용료 : 3
임대료 수입	594	542	472	0	70	0.5	○토지임대수입 : 70
토지매각	3,121	4,294	4,059	0	235	1.7	○토지매각 : 235
변상금	316	725	246	0	479	3.6	○공유재산변상금 : 479
위약금	16	694	659	0	35	0.3	○입찰보증금 : 22 ○계약보증금 : 13
연체료	161	248	118	0	130	1.0	○공유재산연체료 : 128 ○기타연체료 : 2
과태료	28	133	104	0	29	0.2	○학원·교습소 과태료 : 29
기타제재금수입 <sup>4)</sup>	0	6	5	0	1	0.01	○징계부과금 : 1
기타잡수입	1,249	7,860	7,559	0	301	2.2	○기타잡수입 : 301
과년도수입	540	11,853	639	2	11,212	83.2	○과년도수입 : 11,212

4) 기타제재금 수입 : 잡수입 중 변상금, 위약금, 연체료, 과태료 등 명시된 것 이외의 제재금

## 라. 세계잉여금 처리 현황

-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세계잉여금 4,599억원 중 사고이월비 등 이월액 2,36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36억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보다 863억원(38.6%)이 감소한 금액임.

〈표 3-11〉 세계잉여금 현황(2011~2007)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0	2009	2008	2007	5년 평균
예산현액(A)	7,323,558	7,165,685	7,228,011	7,204,036	6,332,876	7,050,833
(결산)세계잉여금(B)	459,947	546,127	521,541	604,808	358,544	498,193
명사이월비	0	-	-	43,069	35,602	15,734
사고이월비	176,007	236,114	149,040	163,313	90,068	162,908
계 속 비	0	-	-	-	-	0
국고보조잔액	60,318	3	1,603	-	-	12,385
순세계잉여금(C)	223,622	310,010	370,898	398,426	232,874	307,166
순세계잉여금율(C/A)	3.1	4.3	5.1	5.5	3.7	4.4

- 2008회계연도부터 최근 4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이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을 정밀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잔액 발생을 감소시킨 측면은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수입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세입·세출예산 편성 시 집행실적을 비교 분석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수시로 개발하고 적용시켜야 할 것임.

### 3. 세출결산

#### 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 2011회계연도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1,205억 5,6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불용률은 전년도(5.0%) 대비 1.8% 감소한 3.2%임.

〈표 3-12〉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C/A)	금액 (D=A-B-C)	비율 (D/A)
7,323,558	6,912,226	94.4	176,007	2.4	235,325	3.2

○ 2011 ~ 2007회계연도 불용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3-13〉 불용액 현황(2011~2007)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D/A)
2011	7,323,558	6,912,226	176,007	235,325	3.2
2010	7,165,685	6,573,690	236,114	355,881	5.0
2009	7,228,011	6,733,073	149,039	345,898	4.8
2008	7,204,036	6,667,954	206,381	329,701	4.6
2007	6,332,877	6,046,911	125,670	160,296	2.5

○ 불용액 발생 원인을 검토하면,

- 계획변경 및 취소는 106억 2,200만원(4.5%),
- 예산절감으로 330억 6,700만원(14.1%),
- 지급사유 미발생 48억 8,800만원(2.1%)이고,
- 집행잔액 1,867억 4,800만원(79.3%)이 불용되었음.

〈표 3-14〉 불용액 원인별 내역(2011~2007)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액 내역					
			계획변경 및 취소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기타
2011	7,323,558	235,325 (100%)	10,622 (4.5%)		33,067 (14.1%)	4,888 (2.1%)	186,748 (79.3%)	
2010	7,165,685	355,881 (100%)	41,100 (11.5%)		4,386 (1.3%)	23,231 (6.5%)	287,164 (80.7%)	
2009	7,228,011	345,898 (100%)	35,348 (10.2%)		50,366 (14.6%)	32,413 (9.4%)	227,771 (65.8%)	
2008	7,204,036	329,701 (100%)	31,349 (9.5%)	267 (0.1%)	16,078 (4.9%)	7,167 (2.2%)	270,761 (82.1%)	4,079 (1.2%)
2007	6,332,877	160,296 (100%)	6,075 (3.8%)	635 (0.4%)	13,670 (8.5%)	2,337 (1.5%)	137,406 (85.7%)	173 (0.1%)

○ 불용액의 경우, 최근 4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1회계연도는 전년대비 33.9%인 1,205억원이 감소된 바, 예산절감 등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 기초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나.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 1) 인건비

○ 교직원 급여는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계약제교원 급여가 주된 것으로, 예산현액 3조 5,442억 4,400만원, 지출액 3조 4,941억 4,800만원, 불용액 500억 9,600만원(불용률 1.4%)으로,

- 전년도 인건비 불용액 1,668억 2,800만원 보다 1,167억 3,200만원이 감소한 것임.

〈표 3-15〉 인건비 예산 집행 현황(2011~2008)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A)	지출액(B)	불용액(C)	불용률(C/A)	총불용액과 대비	
					총불용액(D)	비율(C/D)
2011	3,544,244	3,494,148	50,096	1.4	235,325	21.3
2010	3,503,961	3,337,133	166,828	4.8	355,881	46.9
2009	3,424,719	3,279,837	144,882	4.2	345,898	41.9
2008	3,468,512	3,294,136	174,376	5.0	329,701	52.9

※ 인건비에 포함된 세부사업 : 교육공무원급여, 지방공무원급여, 계약직교(직)원급여

○ 인건비 불용액은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총불용액 2,353억 2,500만원의 21.3%를 차지하고 있어, 2011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인건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과다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교육청의 다양한 인적 구성과 대규모 인원으로 인해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 수년간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인건비 산정의 문제점과 과도한 불용액 발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된 바, 앞으로도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더욱이, 별도의 인건비 사업은 아니지만, 기타직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는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등의 세부사업<sup>5)</sup>에서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건비 예산관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학습보조 인턴교사 인건비 잔액 5억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건비 잔액 20억원, 원어민교사 저등급자 채용 및 중도해지에 따른 인건비 잔액 34억원 등

〈표 3-16〉 기타 인건비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	
				불용액(D)	불용률(D/A)
합 계	33,618	29,778	0	3,840	11.4
학교지원인력관리 <sup>6)</sup>	6,291	5,051	0	1,240	19.7
지방공무원대체인력급여 <sup>7)</sup>	1,711	1,143	0	568	33.2
기타급여 <sup>8)</sup>	25,616	23,584	0	2,032	7.9

## 2)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인건비 및 운영비)

○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사업은 「사립학교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사립 중·고등학교<sup>9)</sup> 및 특수학교 등에 재정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수요액 대비 재정부족액을 공립학교 수준(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 예산현액은 8,677억 6,000만원이고, 8,579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8억 1,200만원(1.1%)이 불용처리되어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재정결함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취지대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사료됨.

〈표 3-17〉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지원내용	예산현액(A)	지출액(B)	불용액(C)	불용률(C/A)
합 계	867,760	857,948	9,812	1.1
인 건 비	828,215	819,415	8,800	1.1
학교운영비	39,545	38,533	1,012	2.6

6) 학교지원인력관리 : 학교회계직원의 산전후휴가에 따른 대체인건비 및 맞춤형복지비

7) 지방공무원대체인력급여 : 지방직공무원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법정부담금, 퇴직금

8) 기타급여 : 학자금대여, 연금지급금, 교직원자녀 보육료

9)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제외학교 :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학교

- 그러나,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626억 1,500만원)의 경우, 실제 법인부담금은 236억 8,600만원으로 법정부담금의 37.8%만을 부담한 바,

〈표 3-18〉 사립중·고 법정부담금의 법인부담 현황(2011~2008학년도)

(단위 : 백만원, %)

학년도	학교수	법정부담금 총액		
		법정부담금 (a)	실제부담금 (b)	부담률 (c=b/a)
2011	295	62,615	23,686	37.8
2010	297	57,655	21,152	36.7
2009	297	50,879	18,403	36.2
2008	297	48,871	17,687	36.2

※ 2011학년도 : 국제중 2교(영훈중, 대원중)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 재정결함지원대상교 중 특수학교 19교 제외함

- 2010학년도(211억 5,200만원) 대비 1.1%인 25억 3,400만원이 증가한 것이라 하나, 사학재단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정부담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 특히, 사립 중·고등학교 295개교 중 73교는 법인부담금을 해당 법인에서 전액 부담한 반면, 22교는 해당 학교법인에서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

〈표 3-19〉 사립 중·고 법인전입금 부담 학교수

(단위 : 교)

지원대상학교			법정부담금 전액미부담	법정부담금 일부 부담	법정부담금 전액 부담
계	중학교	고등학교			
295	107	188	22 (7.5%)	200 (67.8%)	73 (24.7%)

※ 2011학년도 : 국제중 2교(영훈중, 대원중)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 법인부담금 중 의무부담금인 건강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지 못할 경우, 미부담액 만큼 해당학교 학교운영비에서 부담(159교, 69억 6,000만원, 39.3%)하게 되며, 이는 교수·학습활동에 지원되는 운영비 감소를 초래하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활동 수혜가 감소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표 3-20〉 2011학년도 법정부담금 중 건강보험료 부담 현황

(단위 : 백만원, %)

학교수	법정부담금 소요액			건강보험료			
	법정부담금 소요액 (a)	실제부담금 (b)	부담률 (c=b/a)	법정부담금 (d)	실제부담금 (e)	학교운영비 부담금 (f=d-e)	부담률 (g=e/d)
295	62,615	23,686	37.8	17,732	10,772	6,960	60.7

※ 2011학년도 : 국제중 2교(영훈중, 대원중)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 재정결함지원대상교 중 특수학교 19교 제외함

- 또한 최근 언론에서 일부 사립학교 법인의 공사비 및 물품비 등 학교교육비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집행과 부실한 학교운영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었던 바, 재정지원을 하는 사립학교 중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준하여 보다 강력하게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교육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의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법정부담액을 전액 부담하는 법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 개정 건의 등을 통해 법인의 재정 투자를 유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다. 교육시설사업

○ 주요 시설사업비 불용사유는 다음과 같음.

〈표 3-21〉 주요 시설사업비 불용사유

(단위 : 백만원, %)

세부 사업	예산현액 (A)	결산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D/A)	불용사유별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계
교육환경 개선	233,156	168,875	33,487	30,794	13.2	2,317 (7.5)	0 (0)	28,477 (92.5)	30,794 (100)
학교기타 시설증축	263,307	204,793	41,130	17,384	6.6	4,898 (28.2)	0 (0)	12,486 (71.8)	17,384 (100)
학교신설 교실증축	249,022	152,527	84,143	12,352	5.0	0 (0)	0 (0)	12,352 (100)	12,352 (100)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	74,590	56,561	11,686	6,343	8.5	50 (0.9)	6 (0.1)	6,287 (99.0)	6,343 (100)

### 1) 교육환경개선사업

○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332억원 중 1,689억원을 집행하고, 33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08억원이 불용된 바, 주요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23억 1,700만원, 예산절감 94억 6,600만원, 집행잔액 190억 1,100만원임.

- 최근 3개년의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당해연도의 집행률은 낮은 반면,  
이월률과 불용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주요 사업내용이 학교의 시설공사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학교 교육  
여건과 공사추진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영향평가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표 3-22〉 교육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2011~2009)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이월액 (C)	이월률 (C/A)	불용액 (D)	불용률 (D/A)
2011	233,156	168,875	72.4	33,487	14.4	30,794	13.2
2010	395,352	312,292	79.0	49,166	12.4	33,895	8.6
2009	554,340	501,232	90.4	23,727	4.3	29,381	5.3

- 특히, 사업취소에 따른 불용사례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바,
  - ▷ 봉은중 사면부 보수공사는 강남구청에서 긴급 시행으로 8,900만원,
  - ▷ 오류고 전기개선공사는 재난공제회에서 지원받아 수리완료 하여 9,000만원,
  - ▷ 등서초는 강서구청이 긴급 시행하여 1억 800만원,
  - ▷ 전농초 위험석축보수보강공사는 답십리재개발 사업시행사 신청으로 토지교환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공사범위에서 제외 되어 3억 1,200만원,
  - ▷ 목동고 운동장배수로보수공사 1억 5,000만원,
  - ▷ 강동고 노후흙통교체사업 1,800만원,
  - ▷ 덕성여중 교사동 바닥보수 5,000만원,
  - ▷ 배화여고 과학관 외벽보수 1억 800만원,
  - ▷ 한국구화학교 옥상놀이시설 외벽보수 9,000만원,
  - ▷ 태릉고 화장실개선 9,200만원 등이 각각 사업취소로 불용되었음.
  
-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 중 집행잔액이 190억 1,100만원(유치원 3건, 초등학교 502건, 중학교 269건, 고등학교 244건, 특수학교 10건, 각종학교 4건)으로 이는 사업 시행에 따른 낙찰 차액 및 준공정산 후 집행잔액에 해당하는 바, 가용재원의 한정성 등을 고려할 때 집행잔액을 감추경하는 합리적 선택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 2) 학교기타시설증축

- 학교기타시설증축 사업의 경우, 예산액 2,633억원 중 2,048억원을 집행하고, 41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74억원이 발생하였는 바,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48억 9,800만원, 예산절감 35억 2,700만원, 집행잔액 89억 5,800만원임.

〈표 3-23〉 사업변경 및 취소에 따른 불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설립별	사업내용	편성시기	사유	예산편성액	불용액
합계 (10건)					6,145	4,898
1	공립	홍릉초 강당 겸 체육관 증축	본예산	사업취소	70	41
2	공립	용산공고 화장실증축	본예산	사업변경 (규모변경)	672	62
3	공립	상일초 강당겸 체육관 증축	본예산	사업취소	70	70
4	공립	선린초 강당 겸 체육관 증축	본예산	사업취소	70	70
5	공립	방이중 강당 겸 체육관 증축	본예산	사업취소	70	70
6	사립	목동고 강당 겸 체육관 증축	본예산	사업취소	1,220	1,220
7	사립	영락고 강당 겸 체육관 증축	본예산	사업취소	1,145	1,145
8	사립	화곡중 특별교실 증축	사고이월	사업취소	978	370
9	사립	우신고 특별교실 증축	사고이월	사업취소	550	550
10	사립	여원학교 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	사고이월	사업취소	1,300	1,300

- 주요 불용사유 중 상일초, 선린초, 방이중의 강당 겸 체육관 설계비(교당 7,000만원 총 2억 1,000만원)는 운동장부지 협소 등으로, 홍릉초 강당 겸 체육관 증축 설계비(4,100만원)는 증축 여건 부적합으로 불용 처리된 바,
  - 이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도 편성요청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결국 사업자체를 전혀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예산편성 당시 대상기관의 사업추진 여건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부실한 것에 1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업의 예산을 편성 요청한 사업주관부서는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우신고 특별교실 증축 사업은 시공업체와의 분쟁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5억 5,000만원,  
예원학교 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사업은 문화재 매장으로 13억원,  
목동고 강당 겸 체육관 증축 사업은 법인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외부기관의 대응투자금 미확보로 12억 2,000만원,  
영락고 강당 겸 체육관 증축사업은 증축예정 부지가 공원용지로 적정 건폐율과 용적률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연으로 11억 4,500만원 등이 사업변경 및 취소에 따라 각각 불용되었는바,
- 동 사례의 경우, 사업취소, 지연의 원인이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 있지 않다고 하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선행될 협의, 조사 등을 다소 소홀히 하여 편성예산 중 일부가 불용된 것으로 사료됨.
- 집행잔액 89억 5,800만원의 경우, 초등학교 86건, 중학교 66건, 고등학교 21건, 특수학교 3건, 각종학교 2건에 대한 사업 시행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후 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사업입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우선 예산확보에만 주력한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선행요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3)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사업

○ 2011년도 결산에 따르면 학교신설사업과 교실증축사업의 경우 당해연도에 총사업비의 61.3%, 1,525억 2,700만원이 집행되고, 다음연도로 33.8%, 841억 4,3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표 3-24〉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	
	금액	비율	금액(B/A)	비율	금액(C/A)	비율	불용액(D)	비율(D/A)
합 계	249,022	100.0	152,527	61.3	84,143	33.8	12,352	5.0
학교신설	236,390	100.0	147,444	62.4	78,687	33.3	10,259	4.3
교실증축 <sup>10)</sup>	12,632	100.0	5,083	40.2	5,456	43.2	2,093	16.6

○ 학교신설사업비의 경우, 예산현액 2,363억 9,000만원 중 1,474억 4,400만원이 집행되고, 786억 8,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02억 5,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천왕중 토지매입비의 경우, 당초 27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편성예산의 23.7%에 해당하는 64억 2,900만원이 불용된바 이는 예산편성당시 산정한 토지매입비 감정가액과 부지매입을 위한 실제감정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토지매입 계약체결('11. 9.30)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음.
- 물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여 예산편성당시와 실제 계약시점에서 토지매입비에 차이가 있어 집행잔액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2011회계연도에 학교신설(이전)을 목적으로 한 토지매입비 편성 학교가 11교에 불과하여 현장실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10) 교실증축사업은 예산현액 126억 3,200만원 중 50억 8,300만원이 집행되고, 54억 5,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20억 9,300만원(16.6%)이 불용되었음.

- 또한 토지매입을 목적으로 27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을 편성한 사업이라면 예산편성에 앞서 현장방문을 통한 감정가액 등은 사전에 실사되어야 할 절차로 사료되는 바, 천왕중 토지매입비에서 발생한 불용건은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한 사례로써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이외의 학교신설 사업에서 불용이 발생한 것은 사업 공개입찰에 따라 발생하는 낙찰차액과 준공시 안전관리비를 비롯한 각종 보험료 정산 등으로 인하여 불용이 발생한 것임.
  - 불용사유가 대부분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준공정산 차액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사업규모의 산출이 불용률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이며, 낙찰률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방안 마련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학교신설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부지매입비를 비롯하여 설계비와 건설비를 포함하여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사업추진도 부지매입, 설계, 공사완공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지속적인 성격의 사업임을 감안할 때 소요비용 추계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기준점이 되는 요소인 바,
- 당초 사업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할 경우, 집행완료시에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가용재원에 있어서도 예산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정확한 소요액을 추계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비용을 조정하여 회계연도말 불용액 발생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함.

#### 4)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사업은

예산현액 745억 9,000만원 대비

결산액은 565억 6,100만원(75.8%)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억 8,600만원(15.7%)이며,

불용액은 63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5%임.

- 성신여고 조리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예산현액 18억원, 경동고 조리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예산현액 17억 4,000만원, 양재초 급식실 및 학생 식당 신증축 예산현액 7억 3,500만원, 한국구화학교 조리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예산현액 6억 4,000만원 등 총 48억 5,100만원은 전액 사고이월되었음.
- 특히, 한국구화학교의 경우 동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노후조리 기구교체 및 확충 사업(1억 1,700만원)’도 사고이월을 발생시킨 바, 동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계되어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각 공정을 고려하여 본예산과 추경으로 나누어 편성하는 보다 합리적인 자원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표 3-25〉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 중 전액사고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설립별	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불용액 (D)	이월액 (C)	소관부서	사고이월 사유
합 계			4,915	0	64	4,851		
1	사립	성신여고 조리실 및 학생 식당 신증축	1,800	0	0	1,800	성북교육지원청	행정구청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건축승인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2	공립	경동고 조리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740	0	0	1,740	성북교육지원청	민원에 의한 터파기 공사기간 연장으로 공사기간 부족
3	공립	양재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735	0	0	735	강남교육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4	사립	한국구화학교 조리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640	0	64	576	강동교육지원청	교실증축 동시진행,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지연

## 라. 민간투자사업(BTL)

### 1) BTL 운영비(BTL 성과평가위원회 운영비)

○ BTL운영비 예산현액 1억 9,200만원 중 7,5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700만원(불용률 61.1%)이 불용되었음.

〈표 3-26〉 BTL 운영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학교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C=A-B)	불용률 (D/A)
BTL 운영비 (성과평가위원회 운영비)	137	192	75	117	61.1

- 동 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 건설 후 BTL 운영사의 관리운영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해당학교에 성과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sup>11)</sup>임.
- 2011회계연도의 경우, 총 137교(초80교, 중37교, 고20교)에서 시행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학교별로 7~11명(외부위원 포함)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협약에 포함된 성과점검 기준에 따라 서비스 성과를 평가한 바,
- 동 위원회를 운영할 때에는 외부전문가도 적극 참여하게 하여 BTL 시설 운영사의 서비스 품질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11) 민간투자사업 추진 일반지침 제23조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 ① 주무관청은 서비스 성과에 대한 평가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적절한 성과점검기준을 작성하여 실시협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시설의 유용성, 안전성 및 내구성, 서비스 만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사항 및 배점은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주무관청은 담당공무원, 사업시행자,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시설사용자 등으로 구성되는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동 위원회를 자체 평가 방식으로 운영하여 2011년도 외부위원 수당 등의 관련 예산이 불용된 것임.

-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향후 동 위원회가 보다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BTL 대상 학교의 실질적인 서비스 향상과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2) BTL 사업관리

○ BTL 사업관리 사업은 BTL로 추진하여 완공된 137교에 대한 시설임대료(원금+이자)<sup>12)</sup>와 BTL 시설관리 운영사업자에게 운영비<sup>13)</sup>를 지급하는 것으로써,

- 예산현액 1,072억 1,300만원 중 1,017억 9,200만원을 집행되고, 54억 2,100만원(불용률 5.1%)이 불용되었음.
- 불용 사유는, 대상학교의 분기별 집행잔액이 31억 4,800만원, 공사 지연 및 준공연기 등 지급사유 미발생이 22억 4,100만원, 예산절감으로 3,200만원으로 발생하였음.

〈표 3-27〉 BTL 사업 관리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학교수	예산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C=A-B)	불용률 (D/A)
BTL 사업관리	137	107,213	101,792	5,421	5.1

12) 시설임대료 : BTL 시설에 따른 원금과 이자(854억원, 예산편성 과목 - 상환지출)

13) 운영비 : BTL로 운영되는 학교의 시설관리 민간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영비(218억원)

## 마. 학교급식 사업

- 친환경무상급식과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사업비는 예산현액 2,031억 2,800만원 대비  
결산액은 1,809억 7,400만원(89.0%),  
불용액은 221억 5,400만원(11.0%)임.

〈표 3-28〉 학교급식비 관련 사업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	
				불용액 (D)	불용률 (D/A)
합 계	203,128	180,974	0	22,154	11.0
친환경무상급식	134,693	118,318	0	16,375	12.2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68,435	62,656	0	5,779	8.4

### 1) 친환경무상급식사업

-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은 2011년도에 공립초등학교 전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비 예산현액(1,346억 9,300만원) 중 1,183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163억 7,500만원(12.2%)이 불용되었음.
- 초등학교 무상급식실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 공립초 1~3학년은 교육청예산으로 2011학년도 3월부터 지원 되었으며,
  - 공립초 4학년은 4개 자치구<sup>14)</sup>를 제외하고 2011학년도 3월부터 각 자치구에서 해당 학교별로 지원되었고,

14)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랑구 ⇒ 2011. 11월부터 지원

- 공립초 5, 6학년은 서울시에서 2011년도 11월부터 지원하여 실질적인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은 2011년 11월부터 시행되었음.

- 주된 불용사유는

공립초 1~3학년의 경우, 당초 편성일수(180일)와 실제 급식일수(175일)에서 차이가 발생하였고, 급식인원이 감소하여 6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11월부터 전면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고학년(4,5,6학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편성되어 있던 급식지원비에서 8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5,6학년 급식비에서 불용액(17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표 3-29〉 초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대상학년	재원별	예산액 (A)	집행액 (B)	불용액 (C=A-B)	불용률 (C/A*100)	지원기간
계		134,693	118,318	16,375	12.2	
공립초 1~3학년 전체	교육청	103,982	97,976	6,005	5.8	'11. 3월 ~ '12. 2월
4,5,6학년 저소득층자녀	교육청	12,251	3,601	8,649	70.6	'11. 3월 ~ '11. 10월
공립초 5~6학년 전체	서울시	18,461	16,741	1,721	9.3	'11. 11월 ~ '11. 12월

- 공립초 4학년 자치구(21개구)에서 학교별로 직접 지원 : '11. 3월부터 지원
- 공립초 4학년 4개 자치구(강남·서초·송파·중랑구) 지원 : '11.11월부터 지원
- 공립초 4학년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교육청 예산지원) : 2011.3월~10월까지

- 2011년은 초등학교 전학년 친환경무상급식 원년으로 시행 초기 교육청·서울시·자치구와의 분담비율이 미확정되어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바, 학년별로 무상급식 시기를 달리하게 되어 당초 편성예산액과 실제 집행과의 차이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향후에도 교육분야의 보편적 복지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 복지의 편익을 확대시켜야 할 것임.

## 2)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자녀에게 지원되는 학교급식비는 684억 3,500만원 중 626억 5,600만원이 집행되고 57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불용사유는 당초 계획보다 급식일수(180일→175일)와 장기 결석 등으로 인한 급식인원이 감소하였고, 2011년 11월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가 일괄 편성되어 동사업의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바. 방과후학교운영 사업

- 방과후학교운영 사업<sup>15)</sup>은 예산현액 626억 1,200만원 중 582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43억 7,000만원(7.0%)이 불용되었음.

〈표 3-30〉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	
				불용액(D)	불용률(D/A)
방과후학교운영	62,612	58,242	0	4,370	7.0

15)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은 정규수업 종료후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방과후학교 수강권 운영,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는 것임.

- 주요불용 사유는 자유수강권 미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 22억원과 초등돌봄교실 운영사업 집행잔액 16억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sup>16)</sup>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수강권으로, 지원기준확대<sup>17)</sup>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5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바 있으나,
  - 저소득층 자녀의 1인당 연간 지원액이 최대 36만원까지 확대되었음에도 실제 1인당 사용금액은 평균 26만원 수준인 바, 동 사업에 대한 부진 사유가 홍보부족 때문인지, 자유수강권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참여율 부족 때문인지 그 사유를 파악하여 제도의 당초 취지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낙인감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운영, 프로그램 질 제고, 우수강사 확보, 취약계층 및 지역학생 지원과 돌봄기능을 확대 하는 등 다각적인 활성화 제고 방안<sup>18)</sup> 마련도 필요할 것임.
  - 또한, 연간 소요액 산출 시에도 1인당 지원기준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금액을 단순 반영하기 보다는 집행가능 금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초등돌봄교실 운영<sup>19)</sup>의 경우, 전체 초등학교(총 592교)의 76%에 달하는 450교에서 운영하고 있음.

16) 2011학년도 초·중·고 방과후학교 수강현황(교과강좌)

(단위 : 명, %)

총학생수	수강총수			초			중			고		
	합계	저소득층	일반	소계	저소득층	일반	소계	저소득층	일반	소계	저소득층	일반
1,230,549	614,298 (49.9)	129,942 (21.2)	484,356 (78.8)	114,500 (18.6)	24,603 (21.5)	89,897 (78.5)	147,392 (24.0)	57,783 (39.2)	89,609 (60.8)	352,406 (57.4)	47,556 (13.5)	304,850 (86.5)

17)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액(1인당) : 2010년도 30만원에서 2011년도에서 36만원으로 기준액 상향됨.

18) 2011 방과후학교 성과분석연구(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

19) 초등돌봄교실 운영 유형 : 아침돌봄교실, 오후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토요일돌봄교실, 온종일돌봄교실

- 저녁돌봄교실의 경우, 학부모들이 6시이후 학교 돌봄시설 이용을 선호하지 않아 실제 운영 교실수(130실)가 당초 계획(328실)보다 적게 운영됨에 따라 전담강사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운영비 잔액 16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표 3-31〉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

2011.10.20.기준

학교현황			운영교실수		돌봄교실 참여학생수						
학교수 (A)	운영 학교수 (B)	학교수 비율(%) (C=B/A)	돌봄 교실수 (D)	엄마 품 온 종 일 교 실 (E)	총학생수 (F)	돌봄교실 참여학생수					
						아침 돌봄 (G)	오후 돌봄 (H)	저녁 돌봄 (I)	토요 돌봄 (J)	온종일 돌봄 (K)	합계 (G+H+I +J+K)
592	450	76.0	561	191	532,678	3,233	10,080	1,844	732	1,844	17,733

- 서울교육발전계획(2011~2014)에 따라 2014년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목표로 매년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동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와 운영방법 등을 포함하여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학부모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임.

## 사. 교원인사 및 교원연수 관련 사업

### 1) 교원인사관리

-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시 교육청에서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서울시 공·사립 유·초·중·고 교원 78,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음.

-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sup>20)</sup>에서 사업의 적법성 검토, 외부 기관의 담보내용 개발 연구 용역, 일선 학교 실태 조사 분석, 의견수렴, 개발된 담보 내용의 효용성, 적정한 보험료 산정 등을 고려하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후에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에도,
- 교육청이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을 강조하여 무리하게 사업진행을 실시한 바, 결국 교육과학기술부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검토 요청<sup>21)</sup>을 하여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추경에 편성된 예산 3억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 이는,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원들에게 있어 서울만 실시할 경우 지역적 복지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고, 사업 시행 전 중앙부처 등과의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불용된 사례로, 앞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획 수립 시부터 중앙부처 등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조율을 통해 사업이 출발도 하지 못하는 비효율적 예산운용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 교원연수 관련 사업

- 2011년도 교원 연수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특성화고교원전문성신장, 교육과정연수홍보, 영재교육담당교원 전문성신장, 학교급식위생관리, 특수교육연수, 교원연수지원, 교원연수운영 등의 사업에서 예산현액 119억 800만원 대비 평균 21.3%의 불용액 25억 3,800만원이 발생하였음.

20)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1. 9. 6) P24

21)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확대에 따른 유사사업 검토요청[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7095(2011.10.14)]호

- 이는 연수계획 수립 시 수요조사 부실, 주관기관(부서)의 홍보 부족,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연수과정 구성 미흡으로 인하여 교원의 관심이 적어 계획대비 연수인원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이며, 특히, 특성화고교원전문성 신장 사업의 경우 연수예산의 과다 산정으로 인하여 예산대비 최대 29.6%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임.
- 연수예산의 특성상 연수별 신청인원에 의해 예산 집행실적이 좌우되는 만큼 당초 예산 편성 시 정밀한 수요조사와 연수과정 특화를 통해 연수목적의 달성도와 효과 및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관련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표 3-32〉 교원연수 관련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예산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C=A-B)	불용률 (C/A)	담당기관
합	계	11,908	9,370	2,538	21.3	
특성화고교원 전문성신장	직업교육 관련 교원 연수	414	291	123	29.6	진로직업 교육과
교육과정연수 홍보	유, 초, 중등 교원 연수	511	365	146	28.6	교육과정과
영재교육담당교원 전문성신장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296	220	76	25.8	미래인재 교육과
학교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 등	792	593	199	25.1	체육건강과
특수교육연수	통합교육운영학교관리자 연수 등	116	90	26	22.9	책임교육과
교원연수지원	교장, 교감 자격연수 등	6,414	5,124	1,290	20.1	교원정책과
교원연수운영	교원 자율 및 직무연수	3,365	2,687	678	20.0	교육연수원

## 아. 영어교육 관련 사업

- 영어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원어민교사 배치, 영어교육내실화, 영어교사연수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946억 1,300만원 중 860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86억 500만원(9.1%)이 불용되었음.

〈표 3-33〉 영어교육 관련 주요사업비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	
				불용액 (D)	불용률 (D/A)
합 계	94,613	86,008	0	8,605	9.1
원어민교사배치	48,756	42,994	0	5,762	11.8
영어교육내실화	41,247	39,046	0	2,201	5.3
영어교사연수지원	4,610	3,968	0	642	13.9

- 「원어민교사배치」 사업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57억 6,200만원<sup>22)</sup>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영어교육내실화」 사업의 경우, 영어회화전문강사 중도퇴직자 발생으로 인하여 인건비 등 집행잔액 22억원이 불용됨.
- 「영어교사연수지원」 사업의 불용액 6억 4,200만원은 영어교사 연수 위탁기관을 입찰로 선정하여 예산이 절감되었고, TEE 인증평가지험 축소실시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영어공교육강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영어교육사업은

다른 교과목과 비교하여 사회적 수요와 관심의 증가 등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9.1%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중도퇴직 비율, 원어민 교사의 채용 등급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게 연간 소요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22) 불용액 57억 6,200만원 중 약97%인 55억9,400만원은 2012년도에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별로 정산(반납)하여야 함.

## 자. 특수교육운영지원

- 「특수교육운영지원」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필요한 학생에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방과후활동 및 종일반 지원, 장애인식개선 순환 연주회, 장애인 야학 운영 등에 지원된 바, 예산현액 256억 900만원 중 214억 900만원이 집행되고, 이중 16.4%인 42억원이 불용액되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2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24)에 따라 추진하는 치료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93억 6,000만원 중 68억 6,5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9,500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 교육청의 2011년 치료지원대상학생수는 총12,900명이지만, 예산 편성시 전년도 지원받은 인원을 고려하여 6,50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92명이 감소한 6,408명이 신청을 하였고, 월 1인당 신청 상한금액인 12만원보다 적게 신청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향후 치료지원 대상 학생들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치료지원 서비스 혜택을 최대한 많이 누릴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표 3-34〉 특수교육운영지원 사업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	
				불용액 (D)	불용률 (D/A)
특수교육운영지원	25,609	21,409	0	4,200	16.4

차.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사업

○ 기초학력부진학생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22억 7,400만원 중 203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

〈표 3-35〉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사업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	
				불용액 (D)	불용률 (D/A)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	22,274	20,355	0	1,919	8.6

-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사업의 경우,
  -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혁신학교,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중복지원을 배제하는 취지에서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나,
  - 축소된 사업비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가용자원으로 활용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바, 예산절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례로 판단됨.

○ 더욱이 교과부가 2011.12.1 발표한 “2011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36〉 시·도교육청별 기초학력미달 비율

(단위 : %)

구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초6	0.8	1.0	0.6	0.5	0.7	1.1	0.6	0.7	0.9	1.1	0.4	0.7	1.0	0.9	0.7	0.4	0.7
중3	3.3	5.0	3.8	2.2	2.1	3.8	2.6	2.5	4.1	4.3	2.1	3.1	4.1	4.9	2.5	3.2	2.9
고2 (일반계)	2.5	5.0	2.1	1.9	1.9	1.4	1.4	1.6	4.7	3.4	1.5	1.7	2.5	3.2	1.9	2.5	2.5

-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가적인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학력향상을 유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 사업(예산 현액 222억 7,400만원)에서 “예산절감”으로 10억원, “집행잔액” 6억 2,600만원 등 총 19억 1,900만원을 불용시킨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기관운영 목표가 초·중·고등학생의 학력증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교육청 기관유지가 목표인지 주된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결과로 사료되는 바, 동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임.

〈표 3-37〉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미달 비율(2011~2008)

(단위 : %)

구분	2011학년도	2010학년도	2009학년도	2008학년도
초6	1.0	1.6	1.5	2.7
중3	5.0	7.0	9.0	12.8
고2 (일반계)	5.0	6.3	9.3	12.2

## 카. 교육복지지원 사업

- 교육격차 해소와 학력신장 등을 위하여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을 비롯하여 교육복지 사업에 예산현액 2,066억 700만원 중 1,912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153억 7,200만원이 불용처리한 바,

〈표 3-38〉 주요 교육복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	
				불용액 (D)	불용률 (D/A)
합 계	206,607	191,235	0	15,372	7.4
교육복지투자운영	11,616	11,080	0	536	4.6
교육복지특별지원	43,549	42,021	0	1,528	3.5
저소득층자녀 정보교화교육지원	8,454	6,160	0	2,294	27.1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지원	68,435	62,656	0	5,779	8.4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74,553	69,318	0	5,235	7.0

- 「교육복지투자운영」 사업의 경우, 학습보조인턴교사<sup>25)</sup> 중도 퇴직 등으로 5억 3,600만원, 「교육복지특별지원」 사업은 교육복지특별 지원학교(353교)와 일반지원학교(466교)에 지원된 사업으로 15억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한 것임.
-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84억 5,400만원 대비 22억 9,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5) 2011년 학습보조인턴교사 채용('11년 본예산 현황)

- 채용인원 : 총916명
- 사업예산 : 6,190,080천원(교과부 : 교육청 대응투자사업)
- 사업기간 : '11. 3월 ~12월(8월 제외)
- 총 7개 사업 : ①학력향상 중점학교 인턴교사, ②전문계고 산학협력 인턴교사, ③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인턴교사, ④전문상담 인턴교사, ⑤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교사, ⑥과학교육지원 인턴교사, ⑦사교육없는학교 운영지원 인턴교사

- 이는 저소득층자녀에게 지원되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매를 통합계약(공동구매)<sup>26)</sup>의 방법을 통해 실시하여 예산액의 40%인 8억 2,056만원을 절감하였고,
  - 인터넷 통신비 지원의 경우, 2012년도 1,2월분 통신지원비 2억 6,500만원은 당초 2011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12월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을 미지급함으로써 전액이 불용된 바, 이는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기간<sup>27)</sup>의 차이로 인해 교육비특별회계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한 것이며,
  - 이외에 인터넷 통신지원비 지원대상자 자격변동과 미신청 등으로 인하여 1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이중 통신지원비 미신청자로 인하여 불용액 8억 5,200만원이 발생한 것은 통신협약 3사이외의 인터넷통신 가입자는 통신비영수증을 학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통신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어, 신청절차도 번거롭고, 신상 노출에 따른 염려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통신비가 미지급된 것으로 사료되어,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가 통신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구조개선<sup>28)</sup> 방안을 즉각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sup>29)</sup>와 수익자부담경비지원을 위하여 예산현액 745억 5,300만원 중 693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52억 3,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26)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물품, 용역 통합계약(공동구매) 추진-교육재정과-7343(2011.05.04.)호 관련

27) 교육비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구분

- 지방자치법 제125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28)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지역케이블사업자 업무 협약 체결 계획(안)(2011.10월) : 2011년 통신3사(KT, SK브로드밴드, LGU+) 협약=>2012년 통신 3사 + 지역케이블 사업자간 업무 협약 체결로 통신사를 확장하여 사업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 추진 시행 중임

29) 2011년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 중·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지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중학교 과정은 학교운영지원비, 고등학교 과정은 입학금 및 학습비 지원

- 학비지원 대상자는 예산편성 당시 103,136명에서 98,222명으로 4,914명이 감소함에 따라 26억원이 불용되었고, 수익자부담경비의 경우, 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학년이 있어, 당초 예상인원(45,364명)보다 16,459명이 감소함에 따라 25억원의 불용이 발생하여 총 52억 3,5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표 3-39〉 저소득층자녀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종류

구 분	지원대상	내역별	초	중	고
저소득층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수학여행비	134,000원	165,000원	235,000원
		수련활동비	83,000원	84,000원	86,000원
사회적 배려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차상위계층	수학여행비	-	165,000원	235,000원
		수련활동비	-	84,000원	86,000원
		교복비	-	300,000원 이내 (중1)	300,000원 이내(고1)
		앨범비	-	45,000원 이내 (중3)	45,000원 이내(고3)
		교과서대금	-	-	50,000원~ 54,000원 이내
		기숙사비	-	-	기숙사비 50%+기숙사식비 전액

\*사회적배려대상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계열특성  
화중학교에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재학중인 학생

- 교육복지사업의 경우, 지원범위 확대 등으로 예산액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사업계획 수립 시 산출한 자료와 비교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제 지원 대상인원과 금액간 차이가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어,
- 향후 본예산편성 시에는 객관적인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중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타. 불용률이 높은 사업

○ 불용률이 높은 사업(40% 이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방교육평가관리」 사업은 지역교육청 평가주기(격년→매년)와 평가방법(정성평가 위주→정량평가 위주)이 개선됨에 따른 평가용역 예산과 포상금이 절감되어 예산현액 1억 8,900만원 대비 91.3%인 1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
- 「행정개선관리」 사업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 조직구조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체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연기와 예산절감으로 예산현액 1억 8,500만원 대비 87.1%인 1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교육재산및물품관리」 사업은 서신초 정문 옆 무허가 주택 매입 계획이 취소되어 예산현액 2억 2,700만원 대비 82%인 1억 8,6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국제포럼과 내·외국 사정변경에 의한 외국기관 방문 및 초청이 취소되어, 예산현액 3억 900만원 대비 78.5%인 2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반부패청렴정책추진」 사업은 공익신고 건수 및 비리규모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하여 예산현액 1억 4,600만원 대비 67.2%인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성과관리」 사업은 조직개편 및 부서 통폐합 등으로 성과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미지급하였으며, 성과지표개발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예산현액 9,900만원 대비 66%인 6,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BTL운영비」는 각 학교별 성과평가위원회 미개최 및 외부위원 참석률 저조 등으로 예산현액 1억 9,200만원 대비 61.1%인 1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학생정보교육활성화」 사업은 정보올림피아드 지역청 예선대회와 정보의 바다 탐구대회 본청대회 사업 폐지에 따라 예산현액 1억 1,500만원 대비 60.1%인 6,9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앞에서 불용사유가 적시된 사업들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이지만, 예산현액 중 불용률이 높게 발생한 사업으로써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불용사유가 있다 하여도 사전에 불용액 발생요인을 해소치 못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사례라고 판단됨.

**〈표 3-40〉 40%이상 불용률이 높은 사업**

(단위 : 백만원, %)

번호	세부사업	예산현액 (A)	결산액 (B)	불용액 (C)	불용률 (C/A)	담당부서
1	지방교육평가관리	189	16	173	91.3	정책기획담당관
2	행정개선관리	185	24	161	87.1	교육자치담당관
3	교육재산및물품관리	227	41	186	82.0	교육재정과
4	국제교류협력	309	67	242	78.5	교육자치담당관
5	반부패청렴정책추진	146	48	98	67.2	감사관
6	성과관리	99	34	65	66.0	정책기획담당관
7	BTL운영비	192	75	117	61.1	교육시설과
8	학생정보교육활성화	115	46	69	60.1	미래인재교육과
9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948	482	466	49.0	교육연구정보원
10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101	56	45	44.3	총무과
11	한강헤엄처건너기	50	28	22	43.2	중부교육지원청
12	스승의날기념행사	110	65	45	40.5	교원정책과

## 파. 반복적인 예산집행률<sup>30)</sup> 부진 사업

- 2011회계연도에 추진된 사업 중 지난 2010회계연도에 이어 예산집행률이 80%에 미달되는 사업이 총 182개 세부사업 중 9.3%인 17개 사업으로 검토됨.
-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사업별 집행 실적과 결산을 적절히 비교하지 못하여 사업부서의 편성안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 특히, 추경을 통하여 편성된 시설사업비의 경우, 회계연도 폐쇄 시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지, 출납폐쇄시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회계연도 내 실제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교육청의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매년 동일한 사업에서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사업공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예산만 확보하자는 일종의 예산증대의 원칙이 작용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률을 등한시한 채 소요예산만 요구하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실제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의 집행률은 2010회계연도에 나이스 연수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73.1%이고, 2011회계연도에는 나이스 서비스 사업이 일부 취소되어 51%이며, 「예산관리」는 양회계연도 기간에 연구용역 사업계획 취소와 집행잔액으로 각각 76.8%와 74.2%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모두 9개의 사업에서 2010회계연도에서 집행률이 80% 미만이었음에도 2011회계연도에 더욱 감소하였고,

30) 당해연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

- 「학력평가관리」는 2010회계연도에 당초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1회계연도에는 교과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채점예산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어 자체 편성 예산을 불용하였으며, 「건축시설관리」는 2010회계연도에 개축자문위원회 등 각종 협의회의 개최횟수가 줄어 관련 예산이 불용되었고, 2011회계연도에 위탁사업 기초금액의 변경과 낙찰차액 등의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는 바, 개별사업의 예산 집행률과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소홀했다고 판단됨.
- 또한 당초 계획에 수정사항이 있거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기편성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추경 등을 통해 감액 조정하여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재배정될 수 있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표 3-41〉 집행률 80% 미만 사업 현황(2011~2010)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2011년도						2010년도					
	예산현액			집행		사 고 이월비	예산현액			집행		사 고 이월비
	소계(A) [a+b]	본예산액 (a)	추경등 (b)	집행액 (B)	집행률 (B/A)		소계(A) [a+b]	본예산액 (a)	추경등 (b)	집행액 (B)	집행률 (B/A)	
교실증축	12,632	2,107	13,480	5,083	40.2	5,456	16,800	11,760	5,040	13,159	78.3	2,956
교육공보활동 지원	1,521	1,521	-	1,089	71.6	211	432	432	-	330	76.5	-
교육시설재난 대비	2,944	1,292	1,904	1,693	57.5	985	1,805	1,321	485	1,436	79.6	252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운영	948	917	31	482	51.0	-	240	240	-	176	73.1	-
교육환경개선	233,156	147,007	138,772	168,875	72.4	33,487	395,352	257,084	138,268	312,292	79.0	49,166
성과관리	99	99	-	34	34.0	-	45	45	-	35	77.5	-
스승의날 기념행사	110	62	48	65	59.5	-	44	44	-	31	70.8	-
예산관리	1,128	916	212	836	74.2	-	750	465	285	576	76.8	-
학교신설	236,390	151,505	133,953	147,444	62.4	78,687	237,731	168,852	68,879	161,712	68.0	47,412
학력평가관리	1,924	1,196	728	1,408	73.2	-	2,268	1,789	478	1,007	44.4	-
건축시설관리	1,673	1,045	856	911	54.4	291	413	413	-	94	22.7	228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관리	101	101	-	56	55.7	-	173	173	-	94	54.3	-
교원노사관리	102	83	19	80	78.6	-	932	932	-	710	76.2	-
교원임용관리	3,707	3,367	340	2,869	77.4	-	3,552	2,459	1,093	2,492	70.2	-
지원기관시설	14,279	9,497	6,235	11,055	77.4	1,772	10,883	7,997	2,886	7,217	66.3	1,404
학교급식시설 개선및확충	74,590	40,538	63,540	56,561	75.8	11,686	91,226	38,936	52,290	54,980	60.3	29,368
학교기타시설 증축	263,307	126,798	239,248	204,793	77.8	41,130	332,081	172,069	160,012	199,752	60.2	102,738

## 하. 예산 자체 절감계획으로 인한 불용액 증가

○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액 6조 6,165억 200만원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2010년 서울시 전입금 및 2011년 교과부 교부금 감액으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비하고자 ‘201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절감운영계획’에 따라 교육청의 182개 사업 중 83.5%인 152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여 본예산액 대비 1.1%인 715억 6,700만원을 자체 절감하고, 6조 5,449억 3,500만원의 예산을 실제 사업에 운용한 바, 이는 2011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2,236억 2,200만원의 32%를 차지하는 것임.

- 교과부 및 서울시에 대한 의존수입 비율이 높은 교육청 예산 구조상 안정적이지 못한 세입 재원마련을 위하여 당해연도 사업 수행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취지로 사료되나, 의회가 의결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시정 감시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공정성을 기하여 의결한 사항인 바,
- 교육청의 자의적이고 일률적인 예산 절감 시행은 법률에서 정한 시의회 예산 의결권에 대한 일방적 훼손이라 사료되어 교육청의 독단적 예산변경에 엄중 경고해야 할 것임. 아울러, 추후 교육청의 예산 절감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임.

〈표 3-42〉 교육청 예산 자체 절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총사업수	절감사업수	본예산액 (A)	절감액 (B)	절감비율 (B/A)	절감후예산액 (A-B)	비고
182	152	6,616,502	71,567	1.1	6,544,935	

## 4. 예산 전용 및 이체

### 가. 총괄

-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중 운영된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용을 보면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130건) 438억 5,700만원
  - 예산이체(620건) 4조 9,255억 6,900만원임.

〈표 3-43〉 이용·전용·이체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감 액	증 액
합 계	750	4,969,426	4,969,426
이 용	0	0	0
전 용	130	43,857	43,857
이 체	620	4,925,569	4,925,569

### 나. 전용

-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변경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에 변경 등으로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 2011회계연도 중 발생한 전용은 130건, 전용액 4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3-44〉 전용 현황(2011~2007)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2011	2010	2009	2008	2007
건 수	130	156	179	197	81
증 감 액	43,857	31,631	45,269	75,630	34,809

○ 2011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전체 182개 세부사업 중 36.1%인 66개 사업에서 전용이 이루어진 바,

- 「교육방법혁신사업」의 경우, 지역교육청별로 편성되어 있는 교육방법혁신연구팀 운영비를 당초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오류 입력하여 강동교육지원청을 제외한 10개 지역교육청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각 1회씩 총 10회에 걸쳐 전용하였으며, 「전국학생체육대회 사업」의 경우, 전국학생체육대회 소요비용 목별 예산조정을 이유로 7회에 걸쳐 전용을 하는 등 2회 이상 전용을 한 사업수가 26개 사업에 이르고 있음.

〈표 3-45〉 전용 횟수

횟 수	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사업수	66	40	14	6	2	2	1	0	0	0	1

○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전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하나, 예산편성의 과부족 문제를 전용을 통하여 조정하는 것이라 하여도 동일한 사업에서 수차례 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예산전용을 단순히 편의적 사후보정장치로만 인식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실국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다.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의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변동이 있을 때 기관간 예산의 상호 융통을 허가하는 제도로써,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11년 2월 1일 조직개편 및 부서간 업무조정 으로 총620건 4조 9,255억 6,900만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음.
- 이는 전년대비 498건, 금액은 6,547억 4,100만원이 증가한 것임.

〈표 3-46〉 이체 현황(2011~2007)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0	2009	2008	2007
건 수	620	122	12	28	5
증감액	4,925,569	4,270,828	76,733	4,037	29,728

-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는 업무의 원활한 인계인수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직개편 후 빠른 기일내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2011년도 조직개편(11.2.1)에 따른 예산이체의 경우, 결산서상에 이체 승인일이 2011. 9.27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조직개편이라는 단일의 방침에 각기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직운영의 통일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현상이라 판단됨. 향후 조직개편 등 단일방안에 따라 운영되는 예산의 이체는 동일시점에 추진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임.

## 5. 이월사업비

### 가. 전년도(2010년) 이월사업비

-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385건, 2,361억 1,400만원이고, 2,278억 5,9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82억 5,500만원이 불용처리됨.

〈표 3-47〉 전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수(건)	사고이월액 (A=B+C+D)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	불용률 (D/A)
385	236,114	227,859	0	8,255	3.5

- 사고이월액 대비 집행률은 96.5%로, 전년도(91.4%) 대비 5.1% 증가되었음.

- 사고이월비 중 예원학교 등 3개 학교 교육시설 사업 20억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2010회계연도 사고이월 당시에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의례적인 예산 요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사고이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예산확보에 못지 않게 예산집행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표 3-48〉 사고이월된 사업 중 전액 불용된 사업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고이월액 (A)	집행액 (B)	불용액 (C=A-B)	불용사유
합 계		2,000	0	2,000	
1	예원학교 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 <sup>31)</sup>	1,300	0	1,300	문화재발굴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교과부 특별교부사업 미집행(사업비 반납)
2	우신고 특별교실 증축	550	0	550	시공사의 일방적인 착공지연으로 인한 사업 취소
3	목동고 운동장 배수로 보수 공사	150	0	150	학교 자체 예산으로 완공 (운동장 스탠드 철거공사 시행시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배수로 및 맨홀을 같이 보수하여 불용)

31) 2011년 12월 문화재 발굴[중명전(덕수궁 별채) 관련 문화재] 완료, 2012년 토목공사 진행 중임.

- 당해연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고이월을 할 경우에는, 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과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예원학교 강당 및 특별교실 증축사업의 경우처럼 다음연도에 실시 완료가 불확실한 사업을 이월하여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또한, 사고이월 금액 결정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고이월비를 과다하게 편성하기 보다는 치밀한 사업 계획에 따른 적정 금액만을 산정하여 이월시켜야 할 것임.

## 나. 다음연도(2012년) 이월사업비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 2011회계연도에 총301건, 금액 1,760억 700만원이 2012회계연도로 이월처리 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601억 700만원(25.5%)이 감소하였음.

〈표 3-49〉 사고이월 현황(2011~2007)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0	2009	2008	2007
건 수	301	385	283	315	226
금 액	176,007	236,114	149,039	163,313	90,068

- 사고이월사업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2011년도 추경편성을 통해 증액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유가 145건으로 전체의 48.2%, 계약기간 미도래가 22건 7.3%, 납품(공사) 지연이 13건 4.3%, 동절기 공사가 42건 14.0%, 사업 추진기간 부족이 56건 18.6%, 기타가 23건 7.6%를 차지하고 있음.
- 이중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이월의 경우,  
학기 중에는 수업으로 인한 공사가 어려워 방학을 이용하여야 하고, 동절기 방학에는 일부 공사가 제한되어 결국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추경예산 편성 시에 사업기간 및 학교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집행 의지만을 앞세워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됨.

**〈표 3-50〉 사고이월 사유별 내역**

(단위 : 건수, %)

구 분	사고이월 총계	계약기간 미도래	추경편성 사업	납품(공사) 지연	동절기 공사	사업추진 기간부족	기타
건 수	301	22	145	13	42	56	23
비 율	100	7.3	48.2	4.3	14.0	18.6	7.6

-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전액 사고이월된 사업은 총 47건, 209억 4,5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전액 사고이월 사업(119건, 507억 1,700만원)대비 72건, 297억 7,200만원이 감소한 것임.
- 한국구화학교의 경우, 공사기간 부족 및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바, 연말에 계약 등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시기와 계약 등 공사공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며, 그 이월사유의 합당성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여야 할 것임.

〈표 3-51〉 한국구화학교<sup>32)</sup>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이월액	사고이월 사유
합 계		1,557	0	217	1,340	
1	특별교실 증축	800	0	153	64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2	노후 급식시설개보수	640	0	64	576	교실증축 동시진행,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지연
3	노후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	117	0	0	117	교실증축 동시진행,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지연

○ 또한 사고이월 사업 중 전액 사고이월된 사업의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사고이월로 처리하기 보다는 명시이월사업<sup>33)</sup>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얻어 추진해야 할 것임.

- 사고이월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엄밀한 심사 등을 통하여 최대한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당해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 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와 반드시 연계시켜 볼 필요가 있으며, 사업이 사고이월 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한 비용증가, 학생들의 수업 활용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은 더욱 신중하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당해연도내 사업완성이 곤란한 사업은 그 시급성을 따져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할 것임.

32) 한국구화학교 : 사립 특수학교(29학급), 강동구 고덕동 297

33)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3-52〉 전액 사고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C)	소관부서	사고이월 사유
합 계		20,945	20,945	-	
1	배화여중 특별교실 환경개선사업	151	151	예산정보 담당관	방학 중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2	한양공고 외벽보수	308	308	예산정보 담당관	하반기 예산 배정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3	양정중 옥상 방수	221	221	예산정보 담당관	하반기 예산 배정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4	삼각산고 신설	3,334	3,334	교육재정과	조합원간 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로 잔금 지급시기 미도래
5	동일여고 재해복구	67	67	교육재정과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6	염광여메디텍고 강당 외벽보수	500	500	교육시설과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7	신정여상고 외벽보수	540	540	교육시설과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8	화곡보건경영고 특성화사업(실과실)	553	553	교육시설과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미준공 및 기자재 납품 기간 부족
9	과학전시관 방수	15	15	교육시설 관리사업소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10	종량초 강당겸체육관	2,585	2,585	동부교육 지원청	추경예산 편성된 동일교 주차장 복합화 사업과 통합추진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11	혜원여고 장애인편의시설	150	150	동부교육 지원청	학사일정에 의한 방학중 공사 시행 및 엘리베이터 제작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12	송곡관광고 방수공사	63	63	동부교육 지원청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13	은평대영학교 노후조리기구교체및 확충	64	64	서부교육 지원청	급식실공사지연에따른 급식기구 미설치
14	송실고 본관 바닥보수	234	234	서부교육 지원청	방학 중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15	동명여정산고 본관외벽보수	315	315	서부교육 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16	에일디자인고 별관 외벽보수	234	234	서부교육 지원청	설계계획지연으로 인한 공사계약지연
17	서울디자인고 장애인편의시설	180	180	서부교육 지원청	엘리베이터 설치 및 장애인 경사로 위치 선정에 따른 설계변경 및 계약 업체의 포기로 인한 재공고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18	은혜초 옹벽 보수 및 석축 보강	146	146	서부교육 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19	당현초 본관동 방수	63	63	북부교육 지원청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20	은곡초 교사동 방수	63	63	북부교육 지원청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21	노원중 방수	72	72	북부교육 지원청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22	동산정산고 장애인편의시설	90	90	북부교육 지원청	준공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보완처리에 따른 기간 부족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예산현액 (A)	이월액 (C)	소관부서	사고이월 사유
23	용화여고 방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279	279	북부교육 지원청	설계변경 및 학사일정 고려에 의한 착공 지연
24	경기여상 지하교실방수	144	144	중부교육 지원청	학사 일정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25	신광여중 노후교실개축	1,409	1,409	중부교육 지원청	학교용적률 상향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건축허가 지연
26	보성여고 특별교실 개선	360	360	중부교육 지원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27	경신고 장애인편의시설	135	135	중부교육 지원청	동절기 공사중지와 엘리베이터 제작 기간 소요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28	오산고 장애인편의시설	148	148	중부교육 지원청	준공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보완 처리에 따른 기간 부족
29	한국구화학교 노후 조리기구교체 및 확충	117	117	강동교육 지원청	교실증축 동시진행,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지연
30	송파초 옥상방수	72	72	강동교육 지원청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31	명일유 옥상방수	27	27	강동교육 지원청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32	배명중 방수공사	81	81	강동교육 지원청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33	배명고 방수공사	105	105	강동교육 지원청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34	신정여상고 장애인편의시설	180	180	강서교육 지원청	설계변경등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준공 미확인
35	강서고 전기시설개선	387	387	강서교육 지원청	준공 확인 행정절차 기간 소요
36	경북비지니스고 장애인편의시설	135	135	강서교육 지원청	지반조사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부족
37	목동고 항공소음피해학교 방음시설	295	295	강서교육 지원청	공사업체의 공기 미이행
38	신정여상고 화장실온수시설	7	7	강서교육 지원청	준공 확인 행정절차 기간 소요
39	양재초 급식실	735	735	강남교육 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40	일원초 옥상 방수	81	81	강남교육 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41	수도전기공고 냉난방개선	58	58	강남교육 지원청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42	동작초 다목적강당 증축	2,142	2,142	동작교육 지원청	설계완료 후 공사집행으로 사업기간 부족
43	동작초 장애인편의시설	220	220	동작교육 지원청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설계완료 후 사업 집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44	동대부여고본관교실	250	250	성동교육 지원청	준공 확인 행정절차 기간 소요
45	무학여고 방수	90	90	성동교육 지원청	추경예산 편성 및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기간 부족
46	성신여고 조리실및학생 식당신증축	1,800	1,800	성북교육 지원청	행정구청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건축 승인 지연으로 공사기간 부족
47	경동고 조리실및학생식당신증축	1,740	1,740	성북교육 지원청	민원에 의한 터파기 공사기간 연장으로 공사기간 부족

## 6. 지방채 관리

- 2011년도에는 신규 지방채 발행은 없었으며, 2009년도에 발행한 “학교교육여건개선” 지방채와 2010년도에 발행한 “학교신설” 및 “세입결함” 지방채에 대하여 2011회계연도에 지방채상환으로 2,875억 4,900만원(원금2,710억 7,700만원, 이자 164억 7,2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말 현재 잔액은 2,930억 9,900만원임.

〈표 3-53〉 지방채 현황 및 상환내역

(단위 : 백만원)

발행대상 회계연도	상환재원 부담주체	상환조건	사업명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11년말 잔액 (c=a-b)	'11년 이자 납부액
					기 발행액	'11 발행액	계 (a)	기 상환액	'11 상환액	계 (b)		
합 계				607,399	607,399	0	607,399	43,223	271,077	314,300	293,099	16,472
'09년	교과부	5년거치 10년분할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253,632	253,632	0	253,632	43,223	0	43,223	210,409	10,204
소 계				253,632	253,632	0	253,632	43,223	0	43,223	210,409	10,204
'10년	교과부	2년거치 3년분할	학교신설	149,132	149,132	0	149,132	0	143,000	143,000	6,132	1,099
'10년	자체	2년거치 3년분할	세입결함	204,635	204,635	0	204,635	0	128,077	128,077	76,558	5,169
소 계				353,767	353,767	0	353,767	0	271,077	271,077	82,690	6,268

〈표 3-54〉 향후 지방채 상환 계획

(단위 : 백만원)

발행대상 회계연도	상환재원 부담주체	사업명	최초상환연도	최종상환연도	'11년말 잔액 (A)	상 환 계 획					상환후 잔액 (C=A-B)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B)
합 계					293,099	9,532	24,386	24,386	45,427	21,041	124,772	168,327
2009	교과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2015	2024	210,409				21,041	21,041	42,082	168,327
2010	교과부	학교신설	2013	2015	6,132	6,132					6,132	
소 계(국가부담)					216,541	6,132			21,041	21,041	48,214	168,327
2010	자체	세입결함	2013	2015	76,558	3,400	24,386	24,386	24,386		76,558	
소 계(자체부담)					76,558	3,400	24,386	24,386	24,386		76,558	

## 7. 예비비

-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와 사업 추진 중 부득이한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5%이내에서 편성하는 것으로써,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sup>34)</sup>.
- 2011년도에는 예산액 99억 3,400만원에서 총36건의 사업에 84억 4,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73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은혜초 위험시설물 보수 등 4건, 5억 8,800만원이 이월되고, 4억 5,5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지출결정액은 작년대비 2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음.

〈표 3-55〉 예비비 지출 내역(2011~2007)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	2010	2009	2008	2007	5년 평균
건 수	36	17	32	19	69	35
예산액(A)	9,934	11,532	9,250	14,434	18,550	12,740
지출결정액(B)	8,440	8,658	8,191	2,800	12,908	8,199
지출액(C)	7,397	6,960	7,366	2,533	11,067	7,065
다음연도이월액(D)	588	813	588	215	1,199	681
불용액(B - C - D)	455	885	237	52	641	454
지출결정률(B/A)	85.0	75.1	88.6	19.4	69.6	64.4

34) 예비비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예비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재산세 세입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예비비는 집중폭우 및 화재 등 재난에 의한 교육시설의 피해 복구와 안전에 긴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나, 교육 환경개선 사업 등의 사업에 투입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교육청 예비비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여야 할 것임.

- 실제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sup>35)</sup> 납부금 25억 7,200만원 및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소요경비 등 1억 7,700만원은 예비비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됨.

- 당초 예산편성 후 추가 비용발생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한 경비 산출을 통하여 예비비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거나 긴급한 예산의 초과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 예비비의 지출결정시에는 당해연도내에 집행가능한 실제 소요액을 지출함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비비지출 결정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익년도에 집행하여야 할 소요액이라면 예비비에서 지원하지 말고, 일반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임.

---

3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표 3-56〉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내용	지출결정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D=A-B-C)	지출결정 승인일	소관부서	이월사유
합 계		8,440	7,397	588	455	-		
1	인수중 급식실 화재 복구(급식기구구입)	128	128	-	-	02-14	성북교육지원청	
2	인수중 급식실 화재 복구(시설복구)	120	88	-	32	02-14	성북교육지원청	
3	장애인 고용부담금(1분기) 납부 <sup>36)</sup>	643	643	-	-	03-31	예산정보담당관	
4	불광중 변전실 화재 복구	87	87	-	-	04-14	서부교육지원청	
5	가칭 도원초 학교부지 감정평가 <sup>37)</sup>	39	31	-	8	04-27	북부교육지원청	
6	창덕여고 체육관동 긴급 안전진단	15	15	-	-	04-27	강동교육지원청	
7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추가 소요액 <sup>38)</sup>	150	130	-	20	04-27	총무과	
8	신목중 연결통로 구조 안전진단	5	4	-	1	05-11	강서교육지원청	
9	장애인 고용부담금(2분기) 납부	643	643	-	-	05-25	예산정보담당관	
10	이태원초 경사지 정비	51	49	-	2	06-03	중부교육지원청	
11	가칭 효자유치원 부지매입비 <sup>39)</sup>	1,656	1,656	-	-	06-20	교육재정과	
12	일반재산 공매 추진 <sup>40)</sup>	11	11	-	-	07-02	중부교육지원청	
13	신목중 연결통로 보수보강	90	63	-	27	07-12	강서교육지원청	
14	은혜초 위험시설물 보수	45		45	-	07-12	서부교육지원청	동절기 물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기간연장
15	둔촌중 교사동 외벽(치장벽돌) 보수	20	19	-	1	07-19	강동교육지원청	
16	장애인 고용부담금(3분기) 납부	643	643	-	-	07-26	예산정보담당관	
17	대곡초 및 양재초 폭우 피해 복구	428	257	-	171	08-04	강남교육지원청	
18	문창초 폭우 피해 복구	178	159	-	19	08-05	동작교육지원청	
19	교육연수원 폭우 피해 복구	49	47	-	2	08-09	교육연수원	
20	삼육재활학교(분교) 폭우 피해 복구	792	792	-	-	08-11	동작교육지원청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내용	지출결정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D=A-B-C)	지출결정 승인일	소관부서	이월사유
21	원신초 교사동 외벽 보수	80	80	-	-	08-17	동작교육지원청	
22	한성여중 폭우 피해 복구	50	50	-	-	08-22	성북교육지원청	
23	대명중 폭우 피해 복구	70	69	-	1	08-24	강남교육지원청	
24	삼육재활학교(분교) 폭우 피해 복구 추가 지원	250	233	-	17	09-08	동작교육지원청	
25	5급 일반승진시험 자체 추진에 따른 시험관리비용 <sup>41)</sup>	27	17	-	10	09-08	총무과	
26	면일초 폭우 피해 복구	78	78	-	-	09-13	동부교육지원청	
27	천호초 담장 긴급 보수	28	28	-	-	09-21	강동교육지원청	
28	장애인 고용부담금(4분기) 납부	643	643	-	-	09-26	예산정보담당관	
29	지방선거관리 경비(포상금 지급 경비) 추가 납부	50	50	-	-	10-18	총무과	
30	양명초 감람석 파쇄초 철거 및 재포설	200	125	-	75	10-25	강서교육지원청	
31	마천초 옹벽 보수 및 창덕여고 체육관등 보수보강	360	224	104	32	10-27	강동교육지원청	동절기 물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기간연장
32	서울공고 전기설비 긴급 복구	24	6	-	18	11-08	동작교육지원청	
33	은혜초 석축 보강	101	-	101	-	12-07	서부교육지원청	동절기 물공사 중지 등으로 인한 기간연장
34	난우중 강당체육관 화재 피해 복구	505	149	338	18	12-16	동작교육지원청	연말 배정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35	BTL 사업관리(BTL 시설관리 민간운영사업자 지급금) 부족분 <sup>42)</sup>	40	40	-	-	12-23	북부교육지원청	
36	소송 비용 부족분 <sup>43)</sup>	141	140	-	1	12-26	감사관	

- 36) 장애인 고용부담금(1·2·3·4분기분) - 201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본예산 미편성에 따른 예비비 편성  
37) 학교설립계획 취소에 따른 학교부지 환매권 발생으로 기한내 환매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비용  
38) 당초 계획대비 신규 채용 계획 변경으로 인한 규모 및 직렬 확대에 의한 긴급 추가 소요비용  
39) 당초 은평뉴타운 내 유아교육기관 부족 해소를 위하여 은빛초 학교 부지내 12년 3월 개원 예정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입주후 은빛초 학생수가 당초 수용계획보다 700여명이 증가하여 긴급히 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교실증축이 불가피하여 이에 다른 대체부지비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추경 제출이 늦어지면서 12년 3월 개원을 통한 유아교육기관 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부지매입비 지원  
40) 일반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법원 확정 승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강제집행 절차 등) 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41) 행정안전부의 보건직렬 5급 시험 위탁 시행 불가 통보에 따라 자체 추진을 실시하기 위한 긴급 소요 비용  
42) BTL 사업관리(BTL 시설관리 민간 운영사업자 지급금)는 신상계초외 4교의 총민간투자사업비가 2011. 7.13 확정되었는 바, 2011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액 대비 부족분이 발생한 것임  
43) 당해연도 중 소송 증가에 따른 부족 예산 보충

## 8. 채권·채무

### 가. 채권 변동 내역

〈표 3-57〉 채권 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중 발생액 (B)			당해연도중 소멸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D=(A+B)-C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계	이행기간 도래액	이행기간 미도래액
합 계	259,802	13,262	246,540	14,537	1,779	12,758	4,745	1,570	3,175	269,594	13,471	256,123
토지 매각대	9,998	748	9,250	704	235	469	2,632	385	2,247	8,070	598	7,472
토지매각대 분할납부이자	2,274	240	2,034	241	87	154	772	45	727	1,743	282	1,461
원리금이자 전세자금	3,820	0	3,820	0	0	0	140	0	140	3,680	0	3,680
대지료	225	225	0	76	76	0	21	21	0	280	280	0
대가료	67	67	0	0	0	0	40	40	0	27	27	0
입학금	0	0	0	0	0	0	0	0	0	0	0	0
수업료	1,403	1,403	0	488	488	0	920	920	0	971	971	0
기타 사용료	0	0	0	3	3	0	0	0	0	3	3	0
변상금	6,013	6,013	0	478	478	0	79	79	0	6,412	6,412	0
위약금	2,048	2,048	0	168	168	0	56	56	0	2,160	2,160	0
잡수입	2,518	2,518	0	244	244	0	24	24	0	2,738	2,738	0
대여 징확금	231,436	0	231,436	12,135	0	12,135	61	0	61	243,510	0	243,510
사무실임대료	0	0	0	0	0	0	0	0	0	0	0	0

- 201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695억 9,4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45억 3,700만원이 발생하고, 47억 4,500만원이 소멸하였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2,598억 200만원) 대비 97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나. 채무 증감 및 현재액

〈표 3-58〉 채무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종 류 별	2010년도말 현재액 (A)	2011년도 중 증감액			2011년도말 현재액 (A+B)	기한도래 미지급 채무
		계 (B) = ㉠-㉡	채무발생액 ㉠	상환,소멸액 ㉡		
합 계	564,176	△271,077	0	271,077	293,099	0
학교교육 여건개선	210,409	0	0	0	210,409	0
학교신설	149,132	△143,000	0	143,000	6,132	0
세입결함	204,635	△128,077	0	128,077	76,558	0

○ 2011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930억 9,900만원으로, 2010년도말 채무액 5,641억 7,600만원에서, 2,710억 7,7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채무 잔액 중 학교신설사업비(61억 3,200만원)는 국가가 부담하는 채무이며, 세입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2,046억 3,500만원은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 1,280억 7,700만원(자체 부담 채무액의 62.6%)을 상환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사료됨.

〈표 3-59〉 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차입일	차입처/ 차입조건	차 입 액 (A)	상환액 (B)	차입잔액 (C=A-B =D+E)	유동성장기 차입금(D)	장기차입금 (E)
						2012년 상환예정	2013년 이후 상환예정
합 계			607,399	314,300	293,099	9,532	283,567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09.12.29	기획재정부 /5년거치 10년상환	253,632	43,223	210,409	0	210,409
학교신설	'11.2.28	농협 /2년거치 3년상환	149,132	143,000	6,132	6,132	0
세입결함	'11.2.28	농협 /2년거치 3년상환	204,635	128,077	76,558	3,400	73,158

- 최근 3년간 채무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과 2010년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하여 채무액이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없이 상환만 이루어져 보유 채무가 감소하였음.

〈표 3-60〉 채무 변동 내역(2011~2009)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전년도말채무	564,176	284,610	254,968
연도중증감액	△271,077	279,576	29,648
<b>연도말채무액</b>	<b>293,099</b>	<b>564,176</b>	<b>284,610</b>

- 2011회계연도의 채무보유율은 4.0%로 직전 회계연도 채무보유율 7.9%보다 감소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는 당해연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채무증가를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채무상환은 늘린 결과로 사료됨.

〈표 3-61〉 채무보유율 현황(2011~2007)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세 입 결산액(A)	7,372,173	7,119,817	7,254,615	7,272,762	6,405,454
연 도 말 채무액(B)	293,099	564,176	284,610	254,968	527,947
채무율 (B/A)	4.0	7.9	3.9	3.5	8.2

## 9. 공유재산 및 물품

### 가. 공유재산

〈표 3-62〉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종류별	단위	2010년도말 현재액		2011년도중 증감액				2011년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증 가		감 소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23,599,400	27,153,152	3,597,996	750,792	617,712	156,850	26,579,684	27,747,094
토지	m <sup>2</sup>	13,673,484	20,953,736	104,995	144,005	76,157	91,407	13,702,322	21,006,334
건물	m <sup>2</sup>	9,615,530	6,011,563	565,536	567,507	201,508	62,015	9,979,557	6,517,055
공작물	식	38,078	165,957	8,085	15,666	693	1,466	45,470	180,157
입목축	본	264,874	19,341	2,919,193	23,479	339,083	1,896	2,844,984	40,924
기계기구	점	15	849	30	101	1	1	44	949
선박항공기	척(대)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건	7,418	1,705	158	34	270	65	7,306	1,673
유가증권	주	0	0	0	0	0	0	0	0
지상권등 용익물권	건	0	0	0	0	0	0	0	0
특허권 등 기타권리	건	1	1	0	0	0	0	1	1
부동산 신탁수익권	건	0	0	0	0	0	0	0	0

○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13,702천m<sup>2</sup> 21조 63억 3,400만원

건물 9,979천m<sup>2</sup> 6조 5,170억 5,500만원

공작물, 입목축 등 기타 2,898천건에 2,237억 400만원으로  
총 27조 7,470억 9,400만원이며,

2010년도말의 27조 1,531억 5,200만원에 비해

5,939억 4,200만원이 증가한 것임.

○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 토지재산은 하늘초, 은빛초, 강명초, 송곡중, 삼각산고 등의 신설학교 토지매입 등으로 28,838 $m^2$ , 526억원이 증가하였고,
- 건물재산의 증가요인은 학교건물 신축, 증축, 개축분 및 각급 학교 개보수비용 반영에 따른 건물가액이 상승했기 때문이며, 남산초 등 학교용지 일부 매각 및 일반재산 매각, 건물철거에 따라 감소요인이 있어 총 364,028 $m^2$ , 5,055억원이 증가하였음.
- 입목축 재산<sup>44)</sup>의 경우, 2011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각 기관(학교)에서 보유하고는 있지만 대장 등재가 누락되어 있는 재산을 행재정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수치상의 재산증가 현상으로 사료되는 바,
- 비록 학교에서 관리하는 입목축의 특성상 다른 재산과는 달리 세부 내역 및 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전수조사 등 일괄 실시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행정력과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세밀하고 정기적인 재산관리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 나. 물품

- 2011년도말 물품은 80,302건, 4,522억 3,200만원으로, 신규취득(매입) 등으로 514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폐기 등으로 132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음.
- 2010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2,605개가 증가하였고, 금액은 381억 7,100만원이 증가한 것임.

44) 입목축 재산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에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는 수목 재산

〈표 3-63〉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0년도 말 현재액		2011년도 중 증감				증감액(A-B)			2011년도 말 현재액	
	수량	금액	증(A)		감(B)		수량	금액	증감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77,697	414,061	6,191	51,416	3,586	13,245	2,605	38,171	9.22	80,302	452,232
전기통신기기	13,320	53,618	74	702	417	1,575	△343	△873	△1.63	12,977	52,745
사무용 기기	13,681	107,881	1,349	15,089	878	3,420	471	11,669	10.82	14,152	119,550
사무용 집기	2,066	8,985	338	1,185	13	148	325	1,037	11.54	2,391	10,022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1,011	8,385	256	1,187	23	322	233	865	10.32	1,244	9,250
기계요소 및 공작기계	1,539	16,692	15	60	36	221	△21	△161	△0.96	1,518	16,531
산업기계	14,792	59,733	794	15,653	676	2,314	118	13,339	22.33	14,910	73,072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848	4,387	156	591	5	13	151	578	13.18	999	4,965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	1,006	6,069	83	373	32	115	51	258	4.25	1,057	6,327
기타실험장비	6,474	35,375	643	2,384	71	271	572	2,113	5.97	7,046	37,488
기타 잡기기	22,960	112,936	2,483	14,192	1,435	4,846	1,048	9,346	8.28	24,008	122,282

○ 주요 증감사유는,

매입 및 매각(폐기)으로 4,704건, 364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관리전환으로 27건, 9,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사유로 17억 7,600만원이 증가한 것임.

〈표 3-64〉 물품 주요 증감 사유

(단위 : 백만원)

증 감 사유	2011년도 중 증감				증감액(A-B)	
	증(A)		감(B)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191	51,416	3,586	13,245	2,605	38,171
매입(혹은 매각 및 폐기)	5,198	38,879	494	2,390	4,704	36,489
관리전환	168	1,085	195	1,179	△27	△94
기타	825	11,452	2,897	9,676	△2,072	1,776

# 10. 기타의견

## 가. 성인지 예산 대비 시범사업 운영

- 2006년 9월 성인지 예·결산 관련 조항을 포함한 「국가재정법」이 개정<sup>45)</sup>됨에 따라 성인지 예·결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 법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중앙정부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의 개정<sup>46)</sup>에 따라 2013회계연도부터 성인지 예·결산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교육청에서는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sup>47)</sup>」에서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예산 편성”을 설정하였음에도 성인지 관점 예산에 대한 시범사업 운영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은 바,
- 2013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제출과 관련하여 일부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시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5) <국가재정법>

-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성인지 예산서

-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46) <지방재정법>

-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제53조의2(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부칙 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47) 201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P5

2) 중점 예산편성지침

○ 희망교육·책임교육·혁신교육·참여교육 예산편성  
○ 학부모 부담과 학교현장 중점 지원

○ 모든 사업 Zero -Base에서 재검토  
○ 성인지적 관점 예산 편성

## 나.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 재검토

-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11개 지역교육청별로 1억 5,000만원씩 총 16억 5,000만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현안사업 해소를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41조 ·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는 바,
  - 비록 동 사업이 당해연도 중에 예비비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서 지원하기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학교별 소규모 소액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편성한 것이라 하여도, 앞에서 언급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된다 판단하기 어려워 향후 동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임.
- 특히, 2011년도에 동사업을 통하여 지역교육청에서 각급학교에 최소 128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총138교, 142건)을 차등 지원한 바,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기준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학교에는 신청한 예산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하였음.

- 하지만, 일부 지역교육청의 경우,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내부 자체 조사와 심의를 통해 학교를 선정하는 등 절차적 오류가 발생한 사례도 있어 동 사업이 당초 편성 취지대로 운영되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계획적 운영이라는 일련의 예산과정이 순행될 수 있도록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sup>48)</sup>에 따르면 11개 지역 교육청 중 4개 지역교육청에서만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된 바, 동 사업예산의 편성 취지가 예측하지 못한 긴급 현안 해소를 위하여 편성한 것과는 달리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액이라도 불용액이 발생되어야 할 것이 당연함에도 배정된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다는 것은 마치 예산 배정을 기다리며 사업의 예산 규모를 맞추고 나누어 갖기를 한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매우 높음.
- 따라서, 동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예산편성은 근원적으로 지양하고 기 집행된 예산이 당초 취지에 맞는 예산배정 사례였는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3-65〉 현안사업 해소 사업의 금액별 지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합 계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지원사업수	142	10	41	79	12
비 율	100	7.0	28.9	55.6	8.5

48) 서울시교육청 교육자치담당관-3615(2012. 6. 8)호

# 11. 재무회계결산

## 가. 재무결산의 의미

- 회계연도의 시·도교육청 재정운영의 결과인 예산거래(세입·세출 예산집행) 및 예산외거래(결산수정거래, 기타예산외거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로,
  - 재무회계 결산은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의 결과 확정 및 재무보고”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 회계결산은 회계연도내의 거래활동을 계수로 확정하는 것이고, 재무보고는 계수로 확정된 결과를 정보이용자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임.
- 재무회계 결산의 목적은 시·도교육청 회계처리 및 보고와 관련하여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재정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 시·도교육청과 직·간접 이해관계를 지니는 외부이용자(학부모, 지방의원, 타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해관계자) 및 내부관리자 등 정보이용자가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를 파악하는 것임.

## 《 재무회계와 예산회계의 결산절차 비교 》

	<재무회계 결산>	<예산회계 결산>
회계연도 종료 (매년12월31일)		지출원인행위 마감
↓		
출납폐쇄일 (2월 말)	결산자료의 수집 및 대사	세출금의 지출, 반납, 지급 완료
↓		
출납정리기한 (출납폐쇄기한 경과후 10일까지)	회계처리의 확정	세입금의 금고납입 마감
↓		
출납사무의 완결 (3월 말)	회계장부 마감 회계별 재무정보 집계	제반장부 마감
↓		
결산서 작성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의 검토절차수행	부문별 결산서 작성
↓		
결산검사 (20일간)	결산검사	
↓		
결산 승인 신청 (6월말)	제1차 정례회 회기	

### 나. 재무보고서

- 재무보고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경과 등 재무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근거하여 작성·제출되었음.

# 1) 재정상태보고서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총자산은 13조 479억원이고, 총부채는 1조 3,063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1조 7,416억원임.
- 자산<sup>49)</sup>의 경우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이 6,020억원이고, 학교부지 및 건물 등의 비유동자산이 12조 4,459억원임.
- 부채<sup>50)</sup>는 유동성 민자리스부채 등 유동부채가 859억원이고, 장기차입부채 등 비유동부채가 1조 2,203억원임.

〈표 4-1〉 재정상태보고서(요약)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해당연도	총계대비 구성비율	직전연도	직전연도 대비 증감
<b>자산 총계</b>	<b>13,047,916</b>	<b>100.00</b>	<b>12,818,335</b>	<b>229,581</b>
I. 유동자산 <sup>51)</sup>	602,016	4.61	720,388	-118,372
II. 투자자산 <sup>52)</sup>	244,181	1.87	232,136	12,045
III. 유형자산 <sup>53)</sup>	12,194,677	93.46	11,856,977	337,700
IV. 무형자산 <sup>54)</sup>	4,408	0.04	5,926	-1,518
V. 기타비유동자산 <sup>55)</sup>	2,634	0.02	2,908	-274
<b>부채 및 순자산 총계</b>	<b>13,047,916</b>	<b>100.00</b>	<b>12,818,335</b>	<b>229,581</b>
<b>부채 총계</b>	<b>1,306,311</b>	<b>10.01</b>	<b>1,426,630</b>	<b>-120,319</b>
I. 유동부채 <sup>56)</sup>	85,970	0.66	130,401	-44,431
II. 장기차입부채 <sup>57)</sup>	1,219,103	9.34	1,294,790	-75,687
III. 기타비유동부채 <sup>58)</sup>	1,238	0.01	1,439	-201
<b>순자산</b>	<b>11,741,605</b>	<b>89.99</b>	<b>11,391,705</b>	<b>349,900</b>
I. 고정순자산 <sup>59)</sup>	11,226,425	86.04	11,035,792	190,633
II. 일반순자산 <sup>60)</sup>	515,180	3.95	355,913	159,267

49) 지방재정법 제11조 ①자산은 회계실체가 소유하고 이들 자산을 일정기간 보유하거나 사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잠재력이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함.

50) 지방재정법 제11조 ②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의 의무를 말함. ③ 순자산은 회계실체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51)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채권, 미수금, 선급비용, 기타의유동자산 등)

52)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장기대여금, 퇴직급여예치금 등)

53) 교육·학예활동에 1년 이상 반복적,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학교 포함):토지, 건물, 구축물, 교육·연구용기자재, 기계장치, 도서,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임목, 박물관유물, 건설중인자산, 기타의유형자산 등

## 2) 재정운영보고서

- 2011회계연도 총수익은 7조 696억원이고  
총비용은 6조 5,613억원이며, 수익과 비용의 차액은 5,083억원임.
- 수익은 이전수익(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6조 7,936억원  
자체수익 1,936억원, 기타수익 823억원임.
-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3조 5,288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4,658억원  
교육격차해소 3,559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632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 3,672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846억원  
평생교육 127억원  
직업교육 21억원  
교육행정일반 383억원  
기관운영관리 363억원  
지방채상환및리스료 737억원  
기타비현금지출비용 4,323억원임.

---

54)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개발비, 교육컨텐츠 등)  
55)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자산(보증금, 세외장기현금 등)  
56)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등록금선수금, 선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57) 차입거래로부터 발생한 부채 중 회계연도 종료후 1년을 초과하여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장기차입금, 민자리스부채, 금융리스부채 등)  
58)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등)  
59) 고유활동(교육 및 학예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자산(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액에서 그 시설의 투자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조달한 장기차입금, 지방채 및 민자리스부채 등을 뺀 금액)  
60) 순자산 중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사용목적이 지정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는 순자산)을 제외한 금액

### 〈표 4-2〉 재정운영보고서(요약)

(2011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해당연도	총계대비 구성비율	직전연도	직전연도 대비 증감
<b>수익 총계</b>	7,069,686	100.00	6,652,095	417,591
<b>I. 이전수익</b>	6,793,632	96.09	6,217,801	575,831
중앙정부 이전수익	4,073,212	57.61	3,642,196	431,01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2,545,033	36.00	2,403,124	141,909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151,446	2.14	151,768	-322
기타이전수익	23,941	0.34	20,713	3,228
<b>II. 자체수익</b>	193,688	2.74	196,536	-2,848
<b>III. 기타수익</b>	82,366	1.17	237,758	-155,392
<b>비용 총계</b>	6,561,363	100.00	6,469,249	92,114
I. 인적자원운용	3,528,808	53.78	3,362,836	165,972
II. 교수-학습활동지원	465,870	7.10	437,514	28,356
III. 교육격차해소	355,947	5.43	259,161	96,786
IV. 보건/급식/체육활동	163,293	2.49	67,912	95,381
V. 학교재정지원관리	1,367,252	20.84	1,355,105	12,147
VI. 학교교육여건개선	84,606	1.29	189,825	-105,219
VII. 평생교육	12,751	0.19	15,897	-3,146
VIII. 직업교육	2,124	0.03	24,501	-22,377
IX. 교육행정일반	38,355	0.59	62,350	-23,995
X. 기관운영관리	36,312	0.55	43,767	-7,455
XI. 지방채상환및리스크	73,716	1.12	65,093	8,623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432,329	6.59	585,288	-152,959
<b>운영차액</b>	508,323		182,846	325,477

### 3) 부채현황

#### 〈표 4-3〉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해당연도 (A)	총계대비 구성비율	직전연도 (B)	직전연도 대비 증감 (C = A - B)
<b>총 계</b>	1,306,311	100	1,426,630	-120,319
유동부채	85,970	6.58	130,401	-44,431
장기차입부채	1,219,103	93.32	1,294,790	-75,687
기타비유동부채	1,238	0.10	1,439	-201

〈표 4-4〉 부채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		금액
I. 유동부채	1. 보조금반환미지급금	4,411
	2. 미지급이자비용	3,159
	3. 수업료선수금	27,677
	4. 임대료선수금	350
	5. 사용료선수금	702
	6. 자산매각선수금	5,459
	7.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9,532
	8. 유동성민자리스부채	32,716
	9. 유동성금융리스부채	0
	10. 세외예수금	1,964
	소 계	85,970
II. 장기차입부채	1. 장기금융기관차입금	73,157
	2.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210,410
	3. 민자리스부채	935,536
	소 계	1,219,103
III. 기타비유동부채	1. 퇴직급여충당부채	1,127
	2. 장기세외예수금	111
	소 계	1,238
부채총계		1,306,311

**IV. 질의토론 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승인**

**V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VIII. 시정요구사항 : 별첨**

<별첨>

##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시정요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하되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

연번	시정요구사항	내 용
1	<b>보통교부금 추가 확보방안 강구</b>	○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금>의 학생1인당 교육비는 타· 시도교육청보다 낮은 수준인 바 교육재정 지원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어,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 항목과 측정단위 등을 발굴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b>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집행 철저</b>	○ 교육환경개선사업비(예산현액 2,332억원)의 당해연도 집행률 72.4%, 이월률 14.4%, 불용률 13.2%로 나타나는 바. 최근 3년간 이월률과 불용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준비 및 조사에 근거한 예산편성으로 해당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사항	내 용
3	<p align="center"><b>현안해소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b></p>	<p>○ 현안해소 사업비(학교별 소규모 교육환경개선)는 학교현장을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만큼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따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p>
4	<p align="center"><b>교원연수 관련 사업 불용률 과다</b></p>	<p>○ 교원연수관련 사업은 예산현액(119억 800만원) 중 평균 21.3%의 불용률이 발생한 바, 교원 연수의 목적을 고려하여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관련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할 것.</p>
5	<p align="center"><b>기초학력향상 방안 강구</b></p>	<p>○ 2011년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특별지도를 실시하여 기초학력이 향상되는 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도록 조치할 것.</p>

#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안 번호	795
----------	-----

제출년월일 : 2012년 6월 8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

## 2. 결산개요

가. 예산회계의 결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세 입 · 세 출 예 산	7,087,443,272,000	
세입·세출예산현액	7,323,557,500,435	
세 입 결 산 액	7,372,173,425,027	
세 출 결 산 액	6,912,225,932,571	
세계잉여금	계	459,947,492,456
	명시이월액	0
	사고이월액	176,006,987,425
	계속비이월	0
	순세계잉여금	223,621,992,031
	국고보조금 잔액	4,410,513,000
	지방교육채 상환	55,908,000,000

나. 재무회계의 결산

1) 재정상태보고서

해당연도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자 산		13,047,916,089,366	
부채와순자산	계	13,047,916,089,366	
	부 채	1,306,311,412,419	
	순자산	11,741,604,676,947	

2) 재정운영보고서

해당연도 2011년 01월 0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익	7,069,686,556,145	
비 용	6,561,363,285,699	
운영차액	508,323,270,446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지출결정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불 용 액	비 고
8,439,905,000	7,397,499,200	587,617,150	454,788,650	